

정책자료 95-11

# 中國經濟의 國際化 評價

鄭永祿

1995.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中國經濟의 國際化 評價

鄭 永 祿

1995. 12



對外經濟政策研究院



## 序 言

90년대 들어 中國經濟의 발전상이 世界의 주목을 끌고 있다. 높은 인플레이션, 農村의 저생산성 문제, 國有企業의 부실 등 高度經濟成長 과정에서 적지않은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最近 2~3년간 연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등, 12억인구 大國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빠른 변모를 보이고 있다. 이 결과 World Bank 등 세계 유수기관에서 中國을 21세기 世界經濟發展의 핵으로까지 간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關係에서 92. 8 修交以後 兩國間 교역이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3대 交易國中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中國은 최근들어 外國人直接投資의 선별유치와 함께 단순 수출증대 통상정책을 서서히 수정해 가면서 WTO가입을 포함, 對內·外的 經濟制度 改善에 힘을 쏟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력 배양으로 집약되고 있는 中國經濟의 國際化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中國經濟 國際化와 관련해서, 관심을 끄는 것의 하나는 국내 경제 일반제도의 개선으로, 稅制·金融改革과 國有企業의 체질개선, 法制化 강화, 產業政策 추진 등이고, 다른 하나는 WTO가입과 관련된 對外經濟制度의 정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안으로 남아 있는 것은 WTO가입 여부이다. 세계 11위 교역국인 中國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그 영향이 미칠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WTO 가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중이라 대외관련 정책이나 법안이 계속 공표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對外經濟制度 일반에 대해 一目瞭然하게 정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 한계속에서 우선 1995년, 상반기까지 종합한 中國 國際化 관련 制度改革을 정리토록 하였다. 따라서 본 자료가 學界 및 研究界는 물론이고 政府나 企業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본 자료 작성은 本研究院의 정영록 박사가 맡아주었으며, 이영우 연구원, 이오경 연구조원이 자료를 보다 충실하게 하는 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다. 특히 재경원의 현정택 국장, 외무부 이선진 심의관, 주중대사관의 하동만 국장, 조희용 과

장 등 자료 수집과정에서 도움을 주신분께 감사드리고자 한다. 본 자료는 집필  
자 개인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5. 12. 31

對外經濟政策研究院

院 長 柳 莊 熙

# 目 次

I. 中國經濟의 浮上과 國際化 .....	9
1. 國際化의 概念 .....	10
2. 中國의 國際化 背景 .....	11
3. 本書의 研究方向 .....	15
II. 國內經濟 制度整備 .....	17
1. 稅制·金融改革 .....	17
2. 國有企業의 체질 強化 .....	24
3. 中國의 法制度 環境改善 .....	34
III. 對外經濟關聯 制度의 改革 .....	41
1. 中國의 關稅制度 및 關稅率變化 .....	41
2. 中國의 海外現地投資 .....	55
3. 中國의 知財權관련 制度整備 .....	67
4. 對外制度改革과 產業政策과의 連繫性 .....	72
IV. 綜合評價 및 結論 .....	77
1. 中國通商政策의 特徵 .....	77
2. 向後展望 및 對應 .....	82
V. 附 錄 .....	85
1. 中國의 改革·開放 年表 .....	85
2. 中國 對外貿易法 소개 .....	87
3. 中國 25大 輸出入業體(1994년) .....	90

4. 外資系企業買上高上位 30社 .....	91
5. 輸出上位 20大 外資系企業(1994년) .....	92
6. 經濟立法年表 .....	93
<b>參考資料</b> .....	<b>99</b>

## 表 目 次

〈表 1〉 中國의 主要 經濟指標 推移 .....	10
〈表 2〉 國稅, 지방稅, 公營稅 稅目 .....	21
〈表 3〉 中國內 政策金融機關 設치  현황 .....	22
〈表 4〉 國營기업개혁 年표 .....	27
〈表 5〉 經濟貿易委員會 11個  조치 .....	31
〈表 6〉  집중지원될 大·중형 國營기업체 運畧 .....	33
〈表 7〉 關稅率 構造變化 推移(稅率帶別 品目數 및 構成比) .....	46
〈表 8〉 關稅率 細分類 構造 .....	46
〈表 9〉 現行 品目別 平均 關稅率表(21개 大분류 기준) .....	48
〈表 10〉 實效關稅率 推移 .....	49
〈表 11〉 中國의 細分類 關稅率 構造 및 各國의 輸入構造 .....	50
〈表 12〉 關稅率 最高 10個 品目 .....	53
〈表 13〉 關稅引下率 最低 10個 品目 .....	54
〈表 14〉 關稅率 最低 10個 品目 .....	54
〈表 15〉 關稅引下率 最高幅 10個 品目 .....	55
〈表 16〉 中國의 現地投資 推移(허가기준) .....	58
〈表 17〉 現地投資, 投資誘致, 交易關係表 .....	61
〈表 18〉 美·中間 知財權  관련 讓解覺書(1992. 1) .....	70
〈表 19〉 지재권  관련 中國의  대미무역보복  조치(95. 2. 4자) .....	70
〈表 20〉 業種別 標準經濟 規模(1차 발표분) .....	76



## I. 中國經濟의 浮上和 國際化

중국은 1990년대들어 경제적으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중 하나이다. 모택동이라는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사라지고나서 실용노선을 중시하는 등소평體制가 들어선 이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전대미문의 改革·開放政策을 실험해 온 바 있다. 일부에서는 12억 인구의 거대국가가 과연 단기간내에 의도하는 대로 經濟發展을 이룩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기조차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나타난 巨視經濟指標로는 中國經濟 改革·開放이 상당정도 진전했다는 데, 이견이 없을 것 같다. 우선 <表 1>을 통해 開放·改革 開始年度인 1978년과 1994년을 비교해 보면 그동안의 經濟發展의 성과를 쉽게 알 수 있다. 94년말 현재 중국은 인구 12억명(세계 1위)에 GNP 5200억 달러(세계 8위), 輸出額 1210억 달러(세계 11위), 해외직접투자 유치액 339억 달러 등이다. 특이한 것은 과거 16년간 규모가 10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이 外國人直接投資誘致(37.7배), 수출(12.4배), 수입(10.6배) 등 海外部門과 固定資產投資(13.9배), 經常GNP(12.4배) 등에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改革·開放政策의 시행 이후, 해외투자의 적극적인 유치 및 固定資產投資의 확대로 輸出·入의 획기적인 신장이 있었으며, 이것이 GNP규모를 대폭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최근 17-8년 중국은 國民經濟에 차지하는 對外部門의 비중등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國際化를 상당정도 진전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經濟協力 대상국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國際化에 대해 정리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표 1〉 中國의 主要 經濟指標 推移

	1978(A)	1994(B)	2000***	B/A
인구(만명)	96259	119850(1)	130000	1.2
GNP(억원)	3624	44918(8)	-	12.4
1인당 GNP(元)	375	3679	US1300	9.8
수출(억달러)	98	1210(11)	2000	12.4
수입(억달러)	109	1157	2000	10.6
FDI유치(도착기준:억달러)	9*	339	-	37.7
고정자산투자(억불)	1171**	16370	54000	13.9
에너지소비량(표준탄 만톤)	57144	117468	-	2.1
식량생산(만톤)	30477	44510	50000	1.5
석유생산(만톤)	10405	14764	-	1.4
철 강(만톤)	3178	9153	-	2.9

주 : ( )안의 숫치는 세계순위를 표시하고 있음.

자료 : 「중국통계연감, 1995」 참조하여 작성함.

\* : 1983년 수치임.

\*\* : 필자의 추정치임.

\*\*\* : 9차 5개년 개발계획에 나타난 목표치임.

## I.1 國際化의 概念

최근 2~3년간 우리나라 經濟界에는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흐르고 있다. 문민 정부가 출범하면서 “新경제구상”이 제시되었는가 하면 94년 자카르타 APEC 頂上會談을 계기로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계의 “世界化”노력이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통상전문가 특채가 시작되었고, 각 그룹기업이 해외두뇌 유치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현상이다. 그러면 “世界化”란 무엇인가? “國際化”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이들 개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난 95년 9월 개최된 한국정치학회 모임에 발표된 한 논문<sup>1)</sup>에서 그동안 혼란

스럽게 사용되어 온 바 있는 國際化 및 世界化에 대한 개념정립을 위한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주요 논점은

첫째, 國際化와 世界化는 동일한 개념이다.

둘째, 國際化는 인류역사에서 오래된 하나의 과정인 바, 최근의 개념정립에 있어서는 80년대 이후의 특징을 첨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대체로 민족국가적 경쟁이 국제화의 진정한 요인이었다.

넷째, 國際化에 적응하는 자세로는 國家競爭力 배양이 거론되는데, 이는 바로 「輸出競爭力」이나 「比較優位」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본질적으로 國際市場에서 自國의 상품이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世界化와 國際化란 기본적으로 동일한 개념이며, 한 나라의 경제발전과정에서 國內 및 國際市場에서 自國商品의 비교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對·內外的 노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I.2. 中國의 國際化 背景

중국이 언제부터 상기 정의에 따른 國際化를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世界化에 이미 나섰다는 견해와 함께 중국이 무슨 國際化냐?는 입장까지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本稿에서는,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對外經濟관련 몇개의 지표를 근거로 일단 中國經濟의 國際化가 시작되었다는 전제하에 시점을 논해 보고자 한다. 우선 가장 손쉬운 것은 1978년 11기 3중회의에서 채택된 改革·開放政策이 바로 國際化의 시작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改革·開放政策이 잉태된 배경은 간단하다. 근본적으로 중국 지도부 인사들 사이에

1) 백중국 「國際化時代에 있어서 韓國資本主義의 선택에 관한 문헌비평」.

서는 文化大革命이라는 극도의 혼란을 경험하고 나서 1978년 당시 중국의 經濟力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잘 것 없다고 자체 진단하고 뭇가를 통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 이를 위한 한가지 방편으로서 對外的으로 시장경제권 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을 위한 접촉을 증가시키고, 對內的으로 기존의 計劃主義 經濟制度가 효율성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인정, 市場經濟體制의 운용방식을 활발히 도입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중국의 指導部가 국가의 競爭力, 특히 經濟的인 실력을 배양시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改革·開放政策의 채택이란 결국 넓은 의미에서 國際化의 한가지 수단으로서 채택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두번째 중국의 國際化 時點으로는 1985년 전후를 들 수 있다. 중국은 1985년 을 전후하여 실무적으로 國際化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86년 7월 정식으로 GATT가입<sup>2)</sup>을 신청한 것이다. GATT가입신청 이전에도 1984. 10. 12기 3중 전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중앙위원회가 채택한 「經濟體制改革에 관한 決定」이 의미가 있다. 또 한가지는 改革·開放이후 80년대 중반까지 보인 경제의 호황이었다. 1978~1985년간에 걸쳐서 중국의 GNP는 연평균 10%의 실질성장을 기록하였다. 1985년 對外交易規模는 수출입 합계 696억달러(수출 274억달러, 수입 422억달러) 수준으로 1978년의 3.4배로 늘어나게 되었다. 輸出入이 전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표시한 對外開放도 지수는 1985년의 경우 24.1%로 1978년의 11.4%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對外直接投資 유치면에서도 1985년에는 계약기준으로 63.3억달러, 도착기준으로 19.6억달러였는 바, 개방초기인 1979~82년 4년간 유치액을 상회하게 되었다.<sup>3)</sup> 이처럼 改革·開放政策의 효과가 실효성 있게 나타나게 됨으로써 中國政府는 특히 대외경제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차제

2) 중국은 GATT복귀로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는 GATT가 WTO體制로 대체된 만큼 본고에서는 이후에는 GATT加入과 WTO加入을 동일하게 간주하고자 함.

3) 1979~82년간의 海外直接投資 유치액수는 계약기준 70억달러, 도착기준 17.7억달러였음.

에 GATT라는 市場經濟秩序에 아예 편입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하에 GATT복귀를 신청하게 된 것이다.<sup>4)</sup>

上記 3가지 사실을 근거로 중국의 GATT복귀를 신청한 1986. 7월을 기점으로 중국의 國際化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원래 GATT출범시 창설국의 하나였다. 물론 당시는 장개석의 국민당 정부였다. 그러나 1949년, 장개석 정권이 대만으로 후퇴하게 되어 소위 동일관세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진 탈퇴하게 되었다. 中國은 1978년 改革·開放政策 노선의 채택이후 1980년대 초 이미 GATT復歸를 내부적으로 결정하였다. 이후 1981. 5 GATT 섬유위원회 옵저버자격을 획득하였으며, 1982. 9 GATT 옵저버자격을 획득하였고 1986. 7 정식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이후 GATT事務局은 中國의 GATT복귀와 관련, 수차례의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나 1995년 GATT가 WTO로 확대개편 되면서 최근 1~2년간은 이렇다할 진전없이 그대로 이어져오고 있다.

참고로 현재 中國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의 WTO加入을 좀 더 부연하고자 한다. 현재까지 파악된 중국의 WTO가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목적하에 推進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政治的 목적으로는 세계 경제질서에서 중국의 經濟的 입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 1971년 이미 UN에 복귀한 후 UN의 핵심기구인 안정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經濟的으로는 세계 제 11위 교역대국이면서 85%이상의 교역을 WTO회원국과 거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汎世界經濟秩序 운용기구인 WTO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國內的 이유도 있다. WTO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주축세력은 改革·開放을 적극 지지하는 범 등소평계열로 분류되는 인사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등소평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바, 등소평 노선의 고수가 國際潮流에 뒤지지 않

4) 물론 일부 국가에서는 國際貿易遂行에서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紛爭에 대비한 해결책 내지는 회피책의 하나로 GATT복귀가 추구되었다는 견해도 있음.

는 유일한 길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國內 제도자체를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는 스케줄에 따라 改革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단순히 국내적인 조치에 의해서는 보수세력을 위시한 일부 저항에 직면,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으로의 철저한 개혁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외부충격에 의한 內部制度改革을 기할 수 밖에 없다는 자체 판단하에 WTO가입을 그 하나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즉 WTO 가입을 통해 世界經濟秩序의 큰 흐름인 市場經濟秩序에 편입, 조속한 시일내에 經營管理技法, 品質改善, 競爭意識提高 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체약국들의 經濟一般情報(특히 무역, 금융관련) 파악도 용이해지게 되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WTO 加入을 통해 또 한차례 획기적인 交易의 신장을 꾀하고 있다. 물론 中國은 85%이상의 교역을 이미 WTO 會員國과 진행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가로부터 兩者間 무역협정에 따라 MFN, 심지어는 GSP까지도 향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대 교역상대국인 美國과의 交易에서는 매년 MFN 연장 협상에 임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온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WTO가입을 통해 美國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회피하면서 또 한번의 획기적인 交易增加를 꾀하고 있다. 1984년 “섬유협정”에 참여하기전 중국의 섬유류 수출이 60억 달러에 불과하였으나 동 협정참가후 급속한 輸出伸張을 기록한 예가 있다. 1994년의 경우 섬유류 수출이 340억불을 이미 넘어서 중국의 주력 輸出商品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섬유협정가입을 거울삼아 中國政府로서는 일단 WTO체제가 출범한 現在로서는 WTO 가입에 의한 손실보다는 잇점이 훨씬 크다고 자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외에도 中國은 과거 貿易關聯 분규발생시 쌍방협상에 의해 분쟁해결을 시도해온 바 있으나, WTO가입 이후에는 多者間 분쟁기구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현재 中國의 최대 교역 PARTNER는 美國이며 이 결과 주요 무역분쟁당사국도 미국이다. WTO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 中國은 日本, EU 등이 참가하는 多者間 협상을 통해 貿易紛糾의 해결을 시도하게 될 것

이며, 이들 세지역의 입장차이를 이용하는 경우 한 국가의 일방적인 공격으로 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以上을 종합하면, 中國의 WTO가입은 政治·經濟的 目的이 혼합해 있는 복잡한 의도에서 출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國際化의 또다른 시작을 등소평이 심천지역 등 남부지역을 순찰한 1992년 초로 볼 수도 있다. 등소평은 이곳 순찰직후 곧바로 改革·開放정책노선의 지속천명을 선언한 바 있다. 中國은 1989년 6·4天安門 사태라는 예기치 못한 政治的 위기를 맞이함으로써 국가경영에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사회주의 국가의 맹주로 여겨지던 蘇聯이 해체되게 됨으로써 中國의 진로에 대한 새로운 의문이 대두되었다. 이를 돌파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검토되었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改革·開放에 의한 國際化였다. 사회주의 국가군의 구심점이 사라질수록 국가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國家競爭力을 키우는 것이 더욱더 절실해졌다. 이 방법론의 하나로서 市場經濟體制로의 조속한 전환과 시장경제질서내에서의 지분확보가 더욱더 중요시되게 되었다. 이는 바로 과거 美·蘇 양극체제하에서 제3세력의 맹주로서의 역할 내지는 社會主義 국가군의 제2위 지위에 만족하던 것을 떨쳐 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본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었으며, 對外交易에서도 더욱 더 열성을 보였다. WTO加入에도 더 더욱 열성적인 자세를 보여, 關稅率은 이전의 품목평균 43%에서 39.9%로 인하하게 되었다.

### I.3 本書의 研究方向

本書는 상기와 같은 中國의 國際化 추진배경을 기본으로 하여 1995년 말 현재 中國이 추진하고 있는 中國경제의 國際競爭力 배양노력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보고자 한다. 95년 9월 15기 中國 共產黨 黨中央委員會를 통해 2010년까지의 경제

발전경로를 선언적·개괄적으로 포괄하는 「제9차 5개년 개발계획 및 2010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에 관한 건의」를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이 발표하는 經濟發展計劃 등이 특유의 애매모호성을 지님으로써 인해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제개발계획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도 경제성장정책의 지속과 市場經濟化의 가속화로 집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中國의 國際化도 필연적인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은 현재 國家競爭力提高를 위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우선 對內的으로 ① 국민경제 전반의 運營構造(mechanism)를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稅制·金融改革을 도입·실험하고 있으며, ② 국내 경제활동의 주축이면서도 경영상 만성적인 저효율성을 노정시키고 있는 國有企業의 체질강화를 추진하면서, ③ 이러한 각종 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한 法制 環境 整備를 서두르고 있다. 이와함께 對外的으로 WTO회원가입을 통해 외부충격에 의한 國內經濟 체질강화를 겨냥하고 있다. 또한 海外直接投資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習得效果(learning by doing)를 노리는 것과 동시에 많은 건설한 기업을 해외로 진출시켜 해외자원확보는 물론이고 國際市場內에서의 경쟁력 배양 및 자본주의 시장경제 운용방식을 배우고자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중국의 WTO가입 움직임과 이와관련된 產業政策, 중국기업의 현지화 움직임, 그리고 國有企業의 체질강화 등 중국이 自國의 競爭力提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각종 制度改革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자 한다.

## II. 國內經濟 制度整備

中國經濟의 國際化 및 WTO 가입준비와 관련 가장 의미있는 조치는 우선 헌법상 중국이 社會主義 計劃經濟를 포기하고 社會主義 市場經濟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1992년 10월 당14회 대회에서 중국경제체제를 “社會主義 市場經濟”로 규정지은 것이다. 이는 78년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한 이래 14년에 걸친 실험과 성공·실패의 경험을 통해 市場經濟로의 전환·이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비록 景氣過熱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되기는 하였지만 상기 시장경제추구와 관련, 1993. 7. 1을 기점으로 金融, 財政 方面에서 획기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도 金融·財政方面의 개혁과 함께 국유기업의 체질 강화, 그리고 法制度 개선이 國際化 관련 국내 부문의 3대 조치로 볼 수 있다.

### II.1 稅制·金融改革

#### II.1.1 稅制改革

##### II.1.1.1 稅制改革 背景

1980년 이전의 과거 中國 財政制度는 모든 국가수입이 中央政府에 납부되고 중앙에 의하여 승인된 지출내역에 따라 각 지방에 예산이 再交付되는 中央集權的 재정체제였다. 그러나 79년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하면서 우선 沿岸 據點都市를 중점 개방·발전시키고 이를 기점으로 하여 內陸地方으로 개혁·개방을 확산시켜 나간다는 지역별 차별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

기 위해 각 지방으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開發政策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지방에 자원배분, 투자, 생산, 교역 등에 대한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였다. 이 결과 자연스럽게 中國의 財政制度도 변화하게 되었다. 시기적으로 재정제도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0~84 : 지방소속 국유기업 및 집체기업의 이익금을 지방정부 고정수입으로 하고 공상통일세(거래세)는 공통세로 하여 地方政府가 징수하고 일정비율을 中央에 납부
- 85~ : 기업의 모든 이윤을 國家의 수입으로 징수하던 제도(소위 이윤납부제)에서 일정비율의 세액만큼 납부하고 나머지는 유보할 수 있는 제도(조세 납부제도)로 변경하고 모든 세를 地方에서 징수, 일정비율을 中央에 납부
- 88~ : 中央政府와 지방정부간 협의에 의해 中央政府 납부비율을 계약에 의해 재조정.

따라서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中央·地方政府間의 협의에 의한 계약제가 실행되게 되었다. 契約制는 지방에 自治權을 주어 地域開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키고 그 결과로 세수를 증대시킨 후 中央政府가 일정액을 地方政府로 부터 납부받는 것이었다. 즉 선발개발지구에서 얻어지는 개발수익금으로 후발지역을 지원·발전시킨다는 등소평식 不均衡 開發論에 따른 開發戰略이 그 근저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다.

- 첫째, 중앙정부가 조세정책 등 財政政策을 통한 經濟의 조절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됨.
- 둘째, 중앙과 지방간 상납비율 결정을 위해 협상을 하여야 하며 地方의 권한이 增大됨에 따라 협상결과는 점차 中央에 불리해짐.
- 셋째, 상납금이 많은 省은 被害意識과 함께 불만을 갖게 되고 중앙에 보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게 됨.
- 넷째, 開放地域은 자율권 증대로 經濟的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각종

便法(임의적인 減免規程施行 및 세금이외의 각종 잡부금 명목의 과징금 징수)을 동원하여 중앙납부 세수를 줄임으로써 가급적 많은 재원을 地方政府내에서 사용하려 노력함.

다섯째, 일선 稅務官署에 근무하는 세무공무원들은 稅務行政에 대한 경험이 미숙할 뿐 아니라 中央利益보다는 자신들이 직접 소속되어 있는 지방의 이익을 우선하게 되어 租稅徵收行政이 느슨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이와 같은 결과로 중국이 改革·開放을 시작한 79년 이후 중국의 재정은 85년에 흑자를 기록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赤字를 기록하게 되었다. 94년말까지의 財政赤字 累計가 2,100여억RMB에 달하고, 채무 수입분을 제외할 경우엔 그 규모가 6,100여억RMB<sup>5)</sup>에 달하게 되었다. GNP대비 財政收入의 비율을 보면 개방초기인 79년 36.2%이던 것이 점점 하락하여 '94년의 경우에는 11.6%로 하락하게 되었다. 재정수입중 中央財政의 비율은 81년 57%이던 것이 92년 38.6%, 93년 33.3%로 하락하다가 94년 55.7%로 다시 回復되고 있다.

이와같은 差等開發政策과 계약제식 세수배분정책은 국가 전체의 開放·改革의 성공적 추진이라는 經濟的 목표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地方間 격차를 심화시켜 지역간 갈등 및 地域利己主義를 야기하게 되었다. 또한 中央財政이 왜소화되고 빈약해짐에 따라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은 커녕 중앙정부차원의 社會間接投資도 제때 못하게 되는 형편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일부 지방에 대한 중앙의 統制力은 크게 약화되었다.

### II.1.1.2 稅制改革 方向

중국이 추진중인 財政·稅制改革의 중점은 중앙과 지방간 재정지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세를 國稅와 地方稅로 구분, 별도기관에서 징수하여(분리세제 체

5) 현재 換率은 1\$당 8.2RMB에 안정되고 있는 바, 현행 환율로 환산하는 경우 750억 달러에 상당함.

택 및 징수기관 분리), 中央政府의 조세수입을 제도적으로 증대시키고 안정시키는데 있다.

중국은 中央財政의 약화현상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와 함께 이의 해소책을 강구해 왔으나 중앙과 지방간의 理解相衝 및 반발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중국 당국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키 위하여는 安定的 세원확보를 통한 中央財政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 中央政府와 地方政府의 세원을 구분하는 分離稅制를 채택, 중앙정부의 財政赤字 해소는 물론 세율조절 등을 통한 재정의 景氣調節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分離稅制는 원래 92년에 착안하여 절강성, 요녕성, 신강 위그루 自治區와 천진, 무한, 청도, 심양, 중경 등 9개 地域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는데, 94. 1. 1부터 이 제도를 전국에 실시하게 된 것이다. 이의 效率的 시행을 위하여 稅務行政機構를 개편 현재의 稅務總局은 國家(中央政府) 세수의 징수를 담당하고, 지방세무국을 새로 分離·設置하여 지방세수의 징수를 담당케 하고 있다.

그러나 分離稅制는 결국 중앙재정의 強化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각 地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中央當局은 이러한 지방반발을 무마하고 改革制度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94년 가을 주용기 副總理 및 유중리 財政部長 등이 16개 省, 市를 방문하여 기존의 地方利益을 해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sup>6)</sup> 등 협의와 설득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이해를 구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현재는 新制度를 시행함에 큰 장애가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分離稅制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조세수입을 中央財政固定收入(國稅), 地方財政 固定收入(地方稅) 및 中央財政과 地方財政 共通收入(共有稅) 3종으로 구분하고, 공유세는 중앙에서 징수, 일정비율을 지방에 교부하는 것이다.

또한 제도의 정립 및 징세행정의 秩序確立을 위하여 그동안 각 지방정부가 변칙적으로 徵收하고 있는 세금이외의 각종 징수금은<sup>7)</sup> 엄금한다는 명령을 각 지방

6) 예컨대 요녕성의 경우 분리세제를 하더라도 현재 중앙에 납부하고 있는 100억 RMB 대의 납부를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함.

〈表 2〉 國稅, 地方稅, 共有稅 稅目

- 國稅	: 관세, 稅關徵收間接稅, 소비세, 鐵道·銀行·保險 본사의 사업소득세 및 영업세, 중앙소속 국유기업소득세, 輸出還給稅
- 地方稅	: 營業稅, 個人所得稅, 지방소속 국유기업소득세, 집체기업소득세, 외국합자기업소득세, 토지사용세, 도시건설세, 부동산세, 農·牧·漁業稅, 相續稅
- 共有稅	: 附加價值稅(국가 3/4, 지방 1/4비율로 배분), 증권거래세(각 1/2배분), 자원세(해양석유, 천연가스는 중앙이고 기타는 지방)

에 하달하고 있다. 中央과 地方의 세수비율은 6:4의 비율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計劃과 같이 國稅, 地方稅를 구분할 경우 국세의 비중은 약 5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up>7)</sup>

한편, 소득세법에서도 일부 개혁이 있었다. 우선 個人所得稅의 경우 종전 內·外國人을 분리하여 별도의 소득세법을 적용하던 것을 內·外國人 공히 同一稅法, 동일세율의 적용을 받게 하고 있다. 종전 6단계이던 累進稅率構造를 9단계로 늘려 담세능력에 의한 부담 및 公平負擔의 원칙을 강화하였다. 법인세법에 있어서도 종전 內·外國法人間 뿐만아니라 국내 기업간에도 차등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통합하여 單一稅率로 하되 국내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종전 최고 55%)을 현재 外國企業에 적용되는 세율인 33%로 통일하여 內·外國企業間 형평을 기하고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현행 복잡다기한 간접세제에 관하여 附加價值稅를 주체로 하고 소비세, 영업세로 보완하는 체제로 정비하고 세율도 단순화하고 있다.

7) 中央政府에 대한 상납회피용 징수금으로 약 75종에 달한다 함.

8) 실제로 1994년의 경우 國稅의 비중이 55.7%로 나타나고 있음.

## II.1.2. 金融改革

종래 中國의 은행은 국가나 國有企業의 자금을 국가의 명령에 의해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데 그쳤다. 따라서 자본주의 經濟體制의 金融機能을 담당하지 못하였다. 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市場經濟體制로 이행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金融改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금융부문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선 中央銀行이 정부의 금고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흔히 이루어져 오던 政府財政赤字의 증양은행 차입을 더이상 許容하지 않고 재정부가 國債를 발행하여 해결토록 방법을 전환하였다. 또한 通貨指標를 1994. 3/4분기 부터 공개하는 등 中央銀行의 金融政策 수단의 강화에 필요한 초보적인 통계를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여 向後 통화량 조절, 이자율 조절, 公開市場 조절 등 巨視金融手段의 사용

〈表 3〉 中國內 政策金融機關 設置 現況

	國家開發銀行	輸出入銀行	農業發展銀行
1. 設立日時	1994. 4. 13	1994. 7. 1	1994. 11. 13
2. 資本金	500억 RMB	33. 8억 RMB	200억 RMB
3. 設立目的	국가 주요 建設事業에 대한 政策資金의 원활한 공급	機械, 電氣·電子製品 및 플랜트 설비의 수출증대	농업과 농촌경제의 건전한 발전촉진
4. 經營方針	元金保全 중시 및 이윤비추구	좌 동	좌 동
5. 支援對象	- 기초산업부문 - 국유 大企業의 技術革新用 자금 - 삼협댐 등 345개 대·중형프로젝트	- 플랜트 등 자본재수출에 필요한 수출입 자금 공여 - 차관전대업무 등	- 농업부문에 대한 농업정책성 자금공급
6. 銀行長	姚振炎(전 국가계획위원회 부주임)	雷祖華(전 중국은행 부행장)	朱元梁(전 인민은행 부행장보)

\* 韓·中經濟情報 참조.

시 필요한 주요 지표로 삼게 되었다.

金融改革중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1994년도 개혁이었다. 1994년중 中國이 실시한 金融改革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성과는 政策性 금융과 商業性 금융을 분리한 것이다. 즉 3개 정책성 金融機關의 신설을 완료, 외형상 정책성 融資體制의 기반을 완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표 3>과 같다.

또 하나 金融改革의 중요한 내용은 金融市場의 대외개방 문제이다. 당장 中國 人民銀行은 94년 하반기 WTO가입 협상이 타결되는 경우, 북경, 심양, 무한 등 內陸地方의 개방을 발표하려고 준비한 바 있다. 즉, 이들 지역 개방에 대한 國務院의 승인을 94. 12월 중순에 이미 받아 94. 12월말 開放對象地域 省, 市長에게 극비 통보까지 하였다. 그러나 WTO 가입협상이 결렬되는 바람에 일단 보류하였다. 外國銀行 支店에 대한 인민폐(RMB) 取扱許容 문제도<sup>9)</sup>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조만간 일부 외국은행에 대하여 上海와 廣州 두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인민폐(RMB)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이들의 실험과정을 지켜 보아가면서 앞으로 取扱地域과 은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95년 초 개최되었던 全國金融業務會議에서 중국인민은행은 조만간 도시합작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政府計劃에 의하면 조만간 북경, 천진, 상해 등 직할시와 무한, 심양, 서안, 중경, 성도 등 주요 성시 및 대련, 청도, 하문, 영파 등 沿岸開放都市를 포함해서 자금수요가 많고 대출 회수율이 높은 35개 都市에 도시합작은행을 시범적으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들 은행은 非國有企業으로서 해당도시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들에 대한 與·受信業務를 취급하는 순수한 집체 소유제 금융기구가 될 것이다.

한편, 中國에는 인민보험공사, 태평양보험회사, 평안보험회사 등 20여개 국내 보험회사와 미국의 AIG, 일본의 도코마린 등 外國保險會社가 영업활동중이다. 현

9) 한편 중국경제정책입안의 실세로 알려지고 있는 주용기 부총리는 95. 11. 13 영국의 Financial Times와의 기자회견에서 元화의 태환화를 9차 5개년 계획기간의 시초년 도인 96년중 실현시킬 것으로 소개한 바 있음.

재 15개 내외의 국내 地方保險會社와 캐나다의 Manulife보험회사 등 외국보험회사가 中國內 영업점포 개설을 위해 認可申請을 해놓은 상태이고 중국의 우정국과 鐵道公團, 건설공단에서도 보험회사 신설을 희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보험회사는 生命保險과 損害保險 등을 구분하지 않고 보험회사 설립인가만 받으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어떠한 보험이든지 取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보험을 人保險과 財物保險 및 재보험으로 3분류하여 회사별로 업무를 분업화시킨 바 있다.

## II.2 國有企業의 體質 強化

中國政府는 자국 경제의 國際化와 관련 가장 난제중의 하나로 국유기업에 대한 처리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처럼 국유기업은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中國經濟의 골간을 이루어 온 바 있다. 그러나 改革·開放政策 채택이후 새로운 경제여건에 상대적으로 적응이 빠른 향진기업을 중심으로 한 小規模企業에 비해 경쟁력이 뒤짐으로써 현재는 업체수 기준으로 보아 약 40-50%가 적자상태에 허덕이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따라서 중국경제를 국제화 한다는 것은 단순히 海外資本 유입을 늘인다거나 GNP에 점하는 輸出·入 금액비중을 늘이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며 국민경제의 주체인 국유기업의 체질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주력 업체들의 競爭力을 배양하고 나서야 市場開放을 좀 더 과감히 추진할 여지가 그만큼 생기는 것이다.

中國政府는 최근 들어 국유기업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물론 시기적으로 79년 改革·開放以後 과거 16-7년간 일관되게 추진해온 등소평의 정책노선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자신감의 축적도 國有企業問題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따라서 과거의 주요 개혁이

“價格機能”의 도입이었다고 본다면 앞으로의 개혁중점은 “所有權을 결부시킨 國有企業 改革”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II.2.1 國有企業의 位相

중국 국유기업에 대한 통계는 다소 들쭉날쭉하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製造業體와 일반 國有企業體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에 따라 나오는 착오이기도 하다. 중국의 국유기업은 과거 중국 生産活動의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였으나 현재는 개혁·개방의 결과로 비중이 많이 축소되었다. 그러나 현재에 있어서도 중국 공업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中國經濟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아직도 자본, 従業員, 세금 등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企業體數 : 723,000개 (전체 26.8%)
- 従業員數 : 4,599만명 (전체 41%)
- 生産額 : 2조 2,724억RMB (전체 48%)
- 納稅額 : 1,821억RMB (전체 71%)
- 赤字企業 비율 : 46.3%
- 赤字額 : 219억RMB

이와 같은 높은 비중에도 불구하고 國有企業의 생산성과 효율은 집체기업이나 개인기업, 外資企業에 비해 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기업이 적자 상태에 있어 중국경제의 가장 큰 問題點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國有企業體의 문제점을 더욱 심각하게 하는 것은 전체 製造業體 가운데 93년 말 현재 14,400개에 이르는 大·中型 국유기업이 부실도가 심각하다는데 있다. 즉, 이들 대·중형 국유기업 전체가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生産寄與度가 44%이고, '자산보유비중이 62%에 이르며, 세전이익 비중이 59%에 이르는 등 국유기업은 물론이고 國民經濟에서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생존, 損益責任原則 등의 현대경영제도가 확립,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정부가 아무리 지원한다 해도 經營狀態가 날로 악화되고 있다. 당장 이러한 국유기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改革·手術에 착수하는 경우 각종 社會保障制度 보완이라든지, 유휴인력의 재배치, 不實債券의 회수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政策導入에 따라 워낙 그 충격이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자칫 사회 기반마저 해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中國政府도 쉽게 처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당장 국유기업내에는 自體運營 11만 의료기구(종사자 140만명) 및 18,000개(종사자 60만명) 학교 등 부대 福利施設이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처리가 쉽지 않다. 특히 의료시설과 관련, 국유기업 從事者들은 자신뿐 아니라 부양자까지도 기업 부담으로 거의 무료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自己負擔이 거의 전무한 관계로, 약품이 필요이상으로 사용, 현재 지급되는 약품의 40%가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國有企業을 개혁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며, 漸進的이고 단계적일 수 밖에 없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 II.2.2 國有企業 改革 進展 現況

### II.2.2.1 經過

〈表 4〉는 78년 改革·開放政策 채택이후 국유기업 개혁의 연표를 정리하고 있다. 국유기업 개혁과 관련 가장 중요한 조치는 現代企業制度 구축을 주내용으로 한 93.11의 14기 3중전회 결의로 볼 수 있다.<sup>10)</sup> 따라서 國有企業改革을 크게 현대기업제도 주창이전과 그 이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現代企業制度 주창 이전에는 기업이윤 自律處分權을 부여한 것을 비롯 經營請

10) 社會主義 市場經濟 建設 關聯 50條.

〈表 4〉

## 國有企業改革 年表

<p>〈현대 기업제도 주창 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이윤 자율처분권 부여(1978 -)</li> <li>○경영청부제 도입(1984)</li> <li>○실업보험제도 도입(1986)</li> <li>○파산법 제정(1988. 11)</li> <li>○국유기업 경영제도 전환조례 공포(92. 7)</li> <li>○중국 기업회계 준칙 및 중국 기업재무 통칙(소위 “양제”) 채택(93. 6)</li> </ul> <p>〈현대 기업제도 주창 이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50개조 발표(93. 11. 14기 3중전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대 기업제도 구축을 주창</li> </ul> </li> <li>○공사법 제정(93.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4. 7. 1부터 시행</li> </ul> </li> <li>○노동법 제정(94.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95. 1부터 실시</li> </ul> </li> <li>○현대 기업제도 건립 9개 항목 공포(94. 10 이철영 체제개혁위원회 주임)</li> <li>○국유기업개혁 공작회의(94. 11)</li> <li>○대, 중형 기업개혁 관련 경제무역위원회 11개조 발표(95. 3. 25)</li> <li>○기업합병시 부채 임의 탕감 금지 통지(95. 6. 27)</li> </ul>
--

負債 도입, 실업보험제도 도입, 파산법 제정, 국유기업 경영제도 전환 조례공포, 기업회계 준칙 및 企業財務總則의 채택 등이 주류였다.

그러나 국유기업의 개혁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음에 따라 실제로 그만한 개혁은 따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급기야는 現代企業制度 구축을 주창하는 社會主義 시장경제 건설 50개조를 발표하고 나서야 국유기업이 뭔가 변하고 있구나, 뭔가 변해야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주의 市場經濟 건설 50개조의 주요내용은 국유기업 개혁의 골격이 기업의 內部改革과 企業外部環境의 개선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우선 기업내부의 개혁은 企業法人制度의 확립, 정부와 기업의 분리, 공사법에 따른 새로운 企業形態로의 전환,

기업의 조직정비, 고용 및 임금결정의 합리화, 기업 財務會計制度의 개선, 과학적 기업관리제도의 도입, 工會(노동조합)의 참여 등이 주축이 되고 있다. 한편 企業外部環境의 개선은 퇴직보험제도, 실업보험제도, 의료보험제도 등이 그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 II.2.2.2 國有企業 改革 推進現況

### 100대 示範企業의 選定

중국정부는 94.11초 國有企業改革을 위한 100대 시범기업을 선정하여 기업조직 및 경영관리 등 제반 개혁 조치를 示範的으로 운용키로 하였으며, 향후 그 결과를 토대로 다른 기업에 대하여도 擴大·實施해 나가기로 하였다. 선정된 시범기업은 대부분 經營狀態가 좋은 기업이다. 그러나 일부 경영상 문제가 있거나 적자인 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별로 沿海地區에서 內陸地域까지, 산업별로 제조업은 물론 무역 및 여행업까지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개혁의 골자는 國有企業이 공사법에 따라 독립된 “法人”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책임에 의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기업은 公司法에서 정한 회사형태중 소수의 출자자가 소유하는 有限責任公司로 운영되며 극히 소수의 기업은 주식회사 형태로 변환시킬 것이다.

시범기업의 조직은 공사법에 따라 株主會議, 理事會, 執行部 등의 기구를 두고 이 기구에 의해 의사결정 및 집행을 하도록 한다. 시범기업의 경영진은 이사회와의 계약에 의해 임명하고 經營成果에 따라 봉급을 결정토록 하며 근로자 등 회사의 직원들은 경영진과 雇用契約을 체결토록 한다. 각 기업이 실시하는 개혁의 내용은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지역별, 산업별 또는 개별기업의 특성에 따라서 具體的인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시범기업에 대해 특별한 優待나 惠澤措置는 없다고 발표하였는 바, 실제로도 금융, 세제 또는 행정지원상 이렇다 할 특혜조치가 없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선정된 100개 기업은 한번도 해보지 않은 공사제의 전면적 실시에 앞서 이를 “實驗·運營” 해보자는 성격이 강한 것이다. 즉 다른 기업에게 개혁의 “模範”을 보이게 하려는 성격과는 그 예를 달리하고 있다.

### 社會保障制度의 改革

국유기업의 經營收支를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從業員에 대한 퇴직, 실업, 의료 등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하여 經營上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의 해결을 위해 社會保障制度의 개혁을 1995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從業員의 퇴직후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이 負擔하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는 개인별 退職基金 계정을 설치하여 기업의 보조금과 함께 개인의 부담금, 지방정부 등의 보조금을 이 계정에 납입하여 관리하고 퇴직시 해당 개인에게 지불하는 제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동 제도는 1992.5 심천, 1993.2 상해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는데, 상해의 경우 1996년부터는 實際적으로 퇴직자에 대해 연금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현재 個人負擔率은 2-3%에 불과하나 장래 이를 8% 까지 높일 예정이다.

失業保險과 관련 현재 국유기업의 계약 고용자에 한해 실업후 24개월동안 본봉의 50-75%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실업보험제도의 대상을, 향후 集體企業, 私營企業 및 외국인 投資企業 종업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失業保險과 별도로 파산된 기업의 실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 기업파산으로 인한 社會的 불안을 최소화 시킬 계획이다.

종업원의 醫療費도 현재 기업이 부담하고 개인은 거의 부담치 않는 결과 약품 등이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폐해를 인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별 의료계정을 설치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종업원 個人俸給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기업의 補助金을 본인의 계정에 납입하여 의료비를 여기서 지불하며 만약 납입금액이 모자랄 경우 개인 및 기업이 추가 부담토록 하

는 제도이다. 이는 94.11.1 부터 강소성과 강서성 一部地域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 바 있는데, 그러한 경험을 토대로 향후 漸次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國有企業 改革 및 監督機能 強化

國家經濟貿易委, 國家經濟體制改革委, 國家計劃委, 재정부, 인민은행 등 15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유기업개혁 추진 감독기구를 設置·運營하며 동 기구는 100개 시범기업의 개혁 및 국유기업의 國有財産管理 감독 기능 등을 수행한다. 또한 현재 평균 5% 수준에 불과한 국유기업의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유기업의 소득세중 15%를 기업에 유보하여 資本金으로 적립토록 하며 국유기업의 技術革新을 위해 기술개발투자가 전체 고정자산투자의 1/3 수준까지 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 II.2 2.3 經濟 貿易委員會 11개 措置

대형 國有企業體管理를 전담하고 있는 경제무역위원회는 1995년 봄 국유기업 회생관련 11개조를 발표한 바 있다. 이 11개조에는 國有企業 회생과 관련된 가장 綜合的인 조치를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表 5>에 이를 소개하기로 한다.

〈表 5〉

經濟貿易委員會 11個 措置

1조	100개 시범기업에 대한 철저한 現代企業制度 실험; 국무원이 확정한 100개 시범기업에 대해 “社會主義 시장경제건설에 관한 당의 결정”을 토대로 政(府)·企(業)분리, 기업내부 경영 관리 개선, 社會保障制度 체제 수립, 잉여인력의 감원, 파산제도의 확립, 기술진보 및 經濟效率 제고 등 기업운영과 관련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 특히 經濟貿易委員會가 주축이 되어 유관부처와 협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토록 함.
2조	國務院이 확정한 56개 기업집단의 體系構築과 기타 시범사업의 강화 및 평가 (製造業, 科學技術, 貿易, 金融을 종합한 기업그룹의 육성 지향)와 동시에 수권 경영, 산하회사운영, 합병 및 주식참여 등을 실험
3조	국무원이 수개의 시범 기업체를 선정하여 所得稅 납부액의 15%를 환급하여 해당기업의 資本構造를 건전화 하는 작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회생이 전혀 불가능한 수개업체를 선정 파산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
4조	국무원이 하달한 “진민소유제 제조업체 경영 전환 조례” 및 “국유기업 재산 監督·管理 條例”의 철저한 실시를 통해 기업의 자율경영권을 확보
5조	기업내부의 품질, 판매, 자본, 비용 등 경영전반의 관리 강화를 통해 기업체질을 개선하고 “企業財務統則”과, “企業會計準則”을 엄격히 적용
6조	국유기업의 자금운용 및 조달력 강화; 가령 세후 경상이익의 일정부분을 생산 경영 자금으로 배정하며, 적립금, 감가상각비, 賣却·貸貸 등을 통한 수입을 生産·經營資金으로 우선 사용
7조	技術改良強化; 일부자금을 집중시켜 경영관리층이 우수하고, 경영체제 전환이 순조롭고, 시장전망이 좋은 기업에 대해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배양
8조	국유기업의 부채탕감; 自然災害나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부채를 탕감하는 한편, 일부 貸出金을 정부의 투자자금으로 전환
9조	대중형 기업 상황에 대한 統計·調查를 기초로 하되, 산업구조조정, 기업조직, 제품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産業政策과 지역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중점지원 기업 및 산업을 도출, 육성
10조	국유기업 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인력은 政府·企業·職工의 협의를 통해 소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일부 실업인력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전업훈련, 기업소개 등을 통해 인력을 재배치
11조	政府의 社會·經濟管理 직능과 국유자산소유자로서의 기능을 점진적으로 분리

## II.2.3 向後 國有企業 改革 즐기

中國 정부당국이 생각하는 국유기업개혁 시간표는 “실험 2년 전면개혁 4년”이 골격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95-96 2년간에 걸쳐 도출된 각종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97년부터 대대적으로 國有企業改革을 단행, 대체로 2000년까지 전체 국유기업의 개혁을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국유기업개혁과 관계가 있는 경제무역위원회 관계자 또는 體制改革委員會 관계자 및 연구계 인사들의 의견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국유기업 가운데 그 규모별로 處理方向이 다음과 같이 다르다고 한다.

- 大·中型 國有企業 : 궁극적으로 국내 중요업체로서 기간산업으로 간주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1000개 정도만 정부가 직접 경영권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주식 보유를 통해 경영의 일부에 참여하거나 매각
- 小型 國有企業
  - 제품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有關 大型健實企業(상기 1000개 업체)에의 편입 등을 통해 지속 유지
  - 자본 잠식이 이미 상당부분 진전된 업체로 회생 가망성이 없는 업체는 破産, 操業中斷 또는 기업합병을 통해 정리
  - 회생 가망성이 있는 업체는 임대, 도급 등 소위 “國有資産의 민간인 위탁 경영”을 실시하거나 非國有部門의 지분참여 허용과 매각 등을 통한 사유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 政府當局의 국유기업 개혁 방향이 구체적으로 진전될 것 인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그러나 강택민 現주석이 누누히 국유기업 개혁을 독려하면서 ① 大·中型 국유기업 개혁에 주력 ② 國有資産價値 보존 및 증식 ③ 新設 國有企業體는 현대기업제도에 따라 설립 ④ 技術開發 強化 ⑤ 企業負擔 減소 등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이는 국유기업개혁의 성패여부가 등사후(Post-Deng時)의 강주석의 정권안정성과도 연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방국 당중앙서기처 서기를 95.3 공업담당 부총리로 임명한 점도 정부의 국유기업 개혁 의지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지표이다.

〈표 6〉 집중지원될 대·중형 국유기업체 윤곽

<p>○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 : 통신, 전력, 하이테크 등 기간산업 부문 1000여개사</li> </ul> <p>○방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과의 합작사업을 장려할 계획이나 소유권은 국가가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li> <li>- 자금지원 등의 방법에 대한 중점 육성</li> </ul>
---

한편, 중국정부는 국유기업체질 改善·強化方案의 하나로 국유기업체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권장해오고 있다. 對外貿易經濟合作部 등 유관기관에서는 공공차관이나 상업차관 보다는 외국인 투자가 신규자금 수요 등이 불필요함에 따라 더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고, 기술과 자본, 先進企業經營方式 등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효과가 있어 이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외국업체는 기존 외국인 투자제도에 따라 “合作”, “독자” 기업을 설립할 수 있으며 株式買入, 주식공동발행, 리스형식 등이 허용되고 있다.

아직까지 이에 의한 具體的인 성과는 未知數이다. 그런데 실험적이기는 하지만 현재 기업의 흡수 합병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고(94년말 현재 2만업체 추정), 주식회사로 전환된 업체 3.3만개사(상장사 300개사), 국내기업간 각종 合作·協力關係를 맺고 있는 업체 11만개사, 그리고 해외업체와의 합자(12.9만개사), 합작(3.0만개사)의 상당부분이 국유기업체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II.3 中國의 法制度 環境改善

中國은 70년대말 이후 改革·開放政策을 추진하면서 이를 위한 법제화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판단, 헌법개정을 포함, 각종 법령의 新規制定 및 개정을 통한 법체제 구축에 착수해온 바 있다. 최근에는 특히 中國經濟의 활력에 부응하여 법제화 작업을 현저히 가속화시키고 있다.

### II.3.1 改革·開放立法의 推進 背景

#### 改革·開放政策의 執行手段 確保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채택된 改革·開放政策은 중국으로서는 혁명적인 일로서 그 이전의 명령, 계획, 閉鎖的 통치이념으로서는 더 이상 국정을 운영해 나갈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 바 있다. 특히 문화 大革命이라는 홍역을 거치는 과정에서 법체제의 후퇴는 물론이고, 그때까지 성문화된 법률까지도 효력이 정지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改革·開放”정책을 지향하는 데 있어 국가의 기본을 밝히는 헌법을 비롯, 정치, 사회 등 다방면에 걸쳐서 완전히 새로운 법체제의 구축이 요청되게 되었다.

#### ‘人治’와 政治的 便宜主義 脫皮 必要性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제군주에 의한 ‘인치’의 역사가 두드러진 가운데 計劃經濟하에서도 당간부에 의한 인치적 행정이 습관화되어 있었다. 특히 改革·開放 이후까지도 등소평을 비롯한 혁명 1세대 지도자들의 개인적 影響力이 엄청난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혁명 1세대가 후퇴하고 강택민 체제로의 世代交替가 진행되는 현 단계에서는 국정운영이 법제화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보·혁의 갈등속에서 “등소평주의(Dengism)”으로 자리잡고 있는 등소평의 이념을 영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제도화하는 것 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선택속에서도 법제개혁은 긴요한 것이다.

### 多元化 社會의 새로운 秩序定立 必要

중국이 지향하는 바는 20세기 말까지 社會主義 시장경제의 초보적인 건설에 있다. 그런데 사회주의 市場經濟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립하기에는 아직 모호한 면이 있는 바, 특히 ‘社會主義’라는 대전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경제질서를 전환시키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면에서는 시장경제 운영이 중시될 수 밖에 없어 결국 사회가 다원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경우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념에 집착함으로써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였던 종래의 법체계로는 더이상 국정을 運營할 수 없는 한계에 다다랐다.

### 國際的 地位 回復

UN회원국일 뿐 아니라 UN안보리 常任理事局인 중국으로서는 대외관계관련 법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經濟的으로 WTO회원국 지위를 추구하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이에 따른 經濟交流 관련 법률제도의 정비가 긴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II.3.2 改革立法 推進 現況

### 憲政 推移

中華人民共和國은 당초 1949년 건국과 더불어 인민민주주의 獨裁國家 수립을 지향하는 ‘中華人民政治協商會議 共同綱領’과 헌법을 1954년 9월 20일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이후 사회주의 이념을 강조한 1975년 憲法改正 이후 문화 대혁명을 정리하는 1978년 헌법개정이 있었고 이어 1982년 改革·開放政策을 골간으로 한 개혁헌법이 제정되었으며, 이는 1988, 1993년 양차례에 걸쳐 수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우선 1954년 헌법은 社會主義 개조를 위한 방향을 분명히 하고 全國人民代表大會를 국가최고권력기관으로 확립하여 民主集中制를 규정함과 아울러 광범위한 인민민주주의, 통일전선, 전인민소유제를 규정했다. 그러나 이후 人民公司化, 혁명위 설립 등 헌법과 유리된 정치적 운영과 법률구속을 초월하는 프로레타리아 독재 사상의 만연 등으로 憲法規範의 취약성을 노정시키게 된다. 75년 헌법은 당시 文化革命의 결과로서 공산당의 지도적 지위를 강조하고 階級鬭爭의 확대를 지향했다. 이는 결국 정치와 법이 혼동된 시대의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78년 憲法改正은 문혁에 종지부를 찍고 4대 현대화 정책을 도입한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프로레타리아 독재하에 지속적 혁명을 추구한다는 사실을 명기함으로써 본격적 現代化 추진에 아직 일정한 제약을 내포하고 있었다. 82년 헌법개정은 당의 11기 3중전회의의 ‘4대 現代化實現’방침과 동 11기 6중전회의의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문제에 관한 결의’에 기초하는 것이다. ‘개혁이 제2의 혁명’이라는 등소평의 지침에 따라 홍콩, 경제특구 등 예외적 체제 인정, 個人·私營·外資經濟 허용, 농업계약제 인정, 토지사용권의 이전 허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改革·開放政策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여건을 제공하게 되었다.

93년 헌법개정은 88년 개헌에 이은 것으로서 과거 14년간의 改革政策 경험에 기초하여 “中國의 特色이 있는 社會主義”로 지칭되는 기본노선을 도입하였다. 즉,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國家經濟體制 개혁의 목표로 확립하는 동시에 국가의 경제 입법 강화방침을 분명히 함으로써 改革·開放政策의 가속화를 위한 기본법상의 기초를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

### 改革立法 推移

全人代와 동 常務委는 국가 最高權力機關으로서 상기 헌법 특히 82년 이래의 헌법에 기초하여 改革立法活動을 활발히 전개하여 왔다. 93년 개시된 제8기 전인대 상임위는 임기중 사회주의 市場經濟 법률체계의 틀을 구축하기 위하여 “立法 5個年”계획을 세우고 시장주체, 시장질서, 거시조정,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입

법작업에 주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1994년말 현재, 전인대 상무위는 선거법, 全國人民代表大會組織法 등 國家機構組織法, 民法總則, 經濟契約法 등 民事法, 刑法 등 刑事法, 形訴法, 民訴法 등 訴訟法, 勞組法, 集會示威法 등 公民權利關係法, 全民所有制公企業法, 破産法, 公司法, 對外貿易法, 證券法 등 經濟法, 中外合作企業法, 外資企業法 등 對外開放法를 포함하는 175개 주요 법률을 제정하였고 77개의 法律問題에 관한 결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외에도 각 지방 인민대회와 그 상무위가 3,000여개의 地方性 법규를 제정하였고, 국무원도 700여개의 행정법규를 제정하였다.<sup>11)</sup>

### II.3.3 改革立法의 理論的 方向

#### 人治에서 法治로

중국이 사회주의 市場경제를 지향함에 따라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實質的인 권력을 행사해 온 각 기관의 黨委員會의 권력이 약화되며 따라서 “人治”의 요소가 후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 운영의 기본은 가치, 경쟁, 需要·供給 및 적자생존의 원리가 적용되는 바, 평등, 자원, 등가, 공평, 성실, 신용 등 법률요소가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되었다.

#### 權力地上에서 法律地上으로

과거 計劃經濟 특히 고도집중 統一體制下에서의 법률의 지위는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였다. 國民經濟의 운용은 行政權力이 전면에 나서서 관리하는 형식을 취함에 따라 권력지상의 체제였다고 규정지을 수 있다. 반면, 多元化된 이익배분이 요구되는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市場價格이 요소 및 자원배분의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보이지 않는 손’에 의

11) 최근에 제정된 경제관련 주요 입법현황은 〈附錄 V.6〉 참조바람.

한 經濟運用을 뒷받침하기 위해 가치, 需要·供給, 경쟁, 적자생존의 원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法律至上”의 이념이 요구되었다.

#### 身分에서 契約으로

改革·開放以前의 사회는 행정구역이 중앙, 省, 市, 縣에 따라 차등이 있어 각급 기관이 철저히 등급에 의해 대우가 달라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속 인사들의 지위 또한 차별받게 되는 소위 “血統論”, “成分論” 등의 지배하에 있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出身成分이 더욱 더 중시되고, 이는 급기야 75년 憲法下에서 개개 국민의 법률앞의 평등을 부인하게 되는 사태까지 야기하게 되었다. 社會主義 市場經濟 체제하에서는 교환가치의 동일성, 교환쌍방 의사의 일치 등의 요소가 중요한 지위를 점하게 되고 이러한 교류관계를 확정하여 주는 지침은 상호계약에 의해 규정되는 관계가 더욱 중시된다.

#### 權力本位에서 權利本位로

計劃經濟下에서는 Marx가 주창한 “Autarky”의 완성으로서, 閉鎖·孤立社會內에서의 행정권력을 이용한 資源配分을 주로 지향한 바 있다. 그러나 시장경제하의 자원배분 체제에서는 相互權利가 존중되는 방향으로의 법률제정이 요청되고 있다.

### II.3.4 評價

#### 改革立法의 現 段階

改革立法은 주로 82년 헌법에 기초하여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에 걸쳐 단시간내에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으로서 市場經濟 운영을 위한 기본적 체제구축에 필수적인 사항들이 우선 마련된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는 中華人民共和國 정부가 1949년 舊 국민당 정부의 모든 법제를 철폐한 후 사실상 최초로 시도하는 본

격적 법제화 작업으로 평가되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成功的인 작업이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市場經濟의 진전에 따라 아직도 지속적인 立法化 작업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법령도 經濟現實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개정, 보완해 나가야 할 상황에 있다. 시장경제의 골간이 될 계약법, 공사법, 不公正競爭防止法, 은행법, 증권법, 어음법 등이 최근 법제화되었으나 실제 경제활동상의 규범으로 정착되는데는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現 中國이 추진하는 입법활동의 방향이 資本主義的 경제원칙을 외관상 배격하면서 자본주의 법체계를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어 社會經濟構造 내부에 일종의 모순을 안겨줄 소지가 있는 바, 이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조정될 수 있을 것인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 改革立法의 方向

등소평은 ‘改革·開放과 현대화 건설과정에서 항상 한손에는 건설을, 한손에는 법제를 굳게 쥐고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개혁입법은 이와 같이 改革·開放政策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특히 향후에도 입법과정에 있어 아래 사항들이 강조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일단 세계질서와의 참여를 통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만큼 서방 입법분야의 장점을 철저하게 分析·吸收 전향적인 입법활동을 가속화 시킬 것이다.

둘째, 80년대의 모색단계와는 달리 현재는 개혁에 대한 입장이 확고한 만큼 “先改革 後立法”이라는 편법을 택하기 보다는 입법과정을 통해 여타 분야에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을 추진하는 세련된 立法化過程을 보일 것이다.

셋째, 법률의 체계적 정비와 통일에도 주력하여 예컨대 經濟契約法, 對外經濟契約法, 技術契約法 등을 “契約法”으로, 합자기업법, 합작기업법, 외상독자기업법 등은 “外國人投資企業法”으로, 국영기업법, 집체기업조례, 사영기업조례 등은

“기업법”으로 통일하는 등 과거의 부적절한 立法事例를 조정해 나가고 이러한 사례가 재발치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다.

넷째, 입법의 대부분은 人民代表會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경우 자칫 전문성을 결여할 소지가 있는 바, 인민대표회의의 專門委員會議 및 學術. 研究團體의 입법 전문가들의 참여 등에 의한 활성화요구가 커질 것이다.

다섯째, 입법의 내용에 관해서도 좀 더 명확하게, 그리고 현실감이 포착되도록 신중하게 검토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껏 중국법제와 관련 문제시되는 것은 立法體系 자체가 훌륭하면서도 실제 집행이 따르지 못함으로써 입법의 實效性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거 中國社會의 법의식, 인치·덕치·예치의 전통관념, 計劃經濟下의 지시행정 등에 연유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의 입법에서는 現實性, 집행가능성이 보다 더 강조되고 특히 일반의 법의식 향상을 위한 教育·宣傳活動이 중시될 것이다.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 입법의 폭과 내용은 中國內에서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第2의 革命”으로 칭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고 본질적인 것이다. 최근 입법화과정으로 볼 때는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計劃經濟의 틀을 벗어나 市場經濟體制로 진입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12억 人口의 거대국가를 한가지 법제로서 통치한다는 사실자체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地域隔差 등 社會·文化的 요소에 의해 현존 법제자체도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때 그때의 수요 및 요구에 따라 計劃 立法이 아닌 卽속입법이 되는 면도 적지않아 법의 권위와 實效性에 손상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속에서도 중국 改革·開放政策의 실질적 추진에 있어 개혁입법이 차지하는 역할은 심대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개혁입법의 내용이 향후 상당 기간동안 중국이라는 政治·經濟·社會 構造의 성격규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Ⅲ. 對外經濟關聯 制度의 改革

중국이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한 이후 對外經濟關係制度를 개혁시킨 것은 괄목할 만하다. 이는 WTO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으로서 규정에 맞추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면도 상당히 있다. 가령 對外貿易法의 制定<sup>12)</sup>이라든지, 關稅率의 대폭적인 引下라든지 하는 것은 WTO가입 움직임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이와함께 또 한가지 두드러진 것은 中國業體의 해외 現地投資를 증가시키고 있는 움직임이다. 이외에도 美·中 貿易紛爭의 쟁점중의 하나인 知財權關聯 制度改革 등이 중국의 대표적인 對外關聯 制度改革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 Ⅲ.1 中國의 關稅制度 및 關稅率 變化

##### Ⅲ.1.1 中國 關稅制度의 變遷

1951년 5월 이후 80년대 중반까지 중국은 일관되게 “中華人民共和國 稅關 輸出入 細則”을 적용해 왔으며, 이 당시의 관세원칙은 國內 產業保護 및 國內商品의 國際競爭力 확보였다. 중국 國務院은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및 關稅收入을 확보하기 위하여 85년 3월 “中華人民共和國 輸出入 關稅條例” 및 “中華人民共和國 輸出入 細則”을 공표하여 현대적 關稅制度의 기틀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새로 제정된 關稅條例 및 輸出入 細則은 과거에 비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 ① 물품분류에 있어 당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던 CCCN(BTN)상품 분류방법 채택

---

12) 자세한 내용은 <附錄 V.2> 참조바람.

② 세율의 조정 및 인하(평균 세율이 10%정도 인하됨)

③ 보통세율 및 우대세율의 구분

1987년 1월에는 “中華人民共和國 稅關法”을 제정·공표함으로써 1936년 이래 사용해 온 “臨時稅關法”을 대체하였다. 이 법에 따라 납세인의 권리의무, 관세징수 및 감면원칙, 보세창고설정 및 납세인의 이의 신청절차 등 제반규정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에 맞추어 동년 9. 12에는 관세조례도 수정 공표되었다.

1992. 1. 1 稅關 輸出入 細則을 개정 CCCN상품 분류방법을 HS상품 분류시스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으로 대체하고 분류상품 수를 2, 208개에서 6, 250개 품목으로 더욱 세분화시켰다. 同年 3월 關稅條例를 재차 수정하여 원산지규정, 보통세율과 우대세율의 적용방법, 과세가격의 결정기준 등을 정비하였다.

한편, 關稅의 행정관리체제 확립을 위하여 중국은 80. 2 稅關總署의<sup>13)</sup> 기능을 강화하여 國務院 직속기관으로 하고 전국의 세관조직을 중앙에서 통일관리하도록 하였다. 國務院에 정책입안 및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財政部, 稅關總署, 對外經濟貿易部 및 기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關稅細則 委員會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 Ⅲ.1.2 中國의 關稅政策

중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關稅政策은 크게 一般 關稅政策과 特殊關稅政策(關稅優待政策)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一般 關稅政策으로 중국은 1979년 이래 一般關稅政策의 중점을 수출증대, 불요불급한 제품의 수입억제, 국민경제의 발전 및 관세수입의 확보 등에 두고 있다. 이러한 政策目的에 따라 수입이 불가피하거나 장려해야 할 품목<sup>14)</sup>은 關稅를 면제하거나 低率의 關稅를 부가하는

13) 우리나라의 관세청에 해당함.

14) 원재료, 정밀기계, 양곡 등.

반면, 自國產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關稅優待政策과 관련 중국은 경제특구 등 특정지역에 입반출되는 화물, 三資企業 등 특정한 기업이 입반출하는 화물 및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증여물자 등에 대하여는 關稅를 감면 또는 免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은 國務院이 결정토록 하고 있다(關稅法 第 40條).

현재 國務院 결정에 의해 施行하고 있는 우대정책은<sup>15)</sup> 다음과 같다.

- ① 5個 經濟特區(심천, 주해, 산둥, 하문, 해남) 및 14개 연해 개방도시내에 있는 經濟技術開發區에 대한 관세감면
- ② 外資企業에 대한 관세우대
  - 先進技術 및 중국내에서 공급이 불가능한 시설 또는 자재수입시
- ③ 技術導入에 대한 관세우대
  - 企業의 技術力 향상을 위한 기계설비 및 기계도입시 14개 開放都市의 경우 관세면제, 기타 지역은 감세

### Ⅲ.1.3 現行 關稅率

#### Ⅲ.1.3.1 關稅率 構造

關稅率은 國務院에서 결정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관세율의 개정은 國務院의 관세 세칙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中國의 關稅率 구조는 HS 분류원칙에 따라 21개 대분류, 97개 중분류 및 6,321개 세분류로 나누고 있다. 中國은 그동안 開放政策의 추진 및 WTO가입의 추진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關稅率의 引下 또는 조정조치를 단행하여 現在 公式發表에 의한 산술평균 關稅率은 36.4%, 무역량 가중평균 관세율은 약 20%이다.

15) 이 특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는 외자기업에 대한 내국민대우부여와 함께 쟁점이 되고 있으며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음.

그런데 江澤民 국가주석은 95년말 APEC OSAKA회의에 참석, 自國의 開放化 조치를 綜合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우선 關稅率과 관련, 1996년 1.1 부터 평균 관세율을 30%상당 인하하기로 하였다.<sup>16)</sup> 이렇게 되면 1996년부터 品目平均關稅率이 현행 36.4%에서 23%로 인하되게 된다. 이는 中國政府가 WTO 가입과 관련, 이미 지난 94. 8 자체 인하계획에 의해 제시한 關稅引下率을<sup>17)</sup> WTO 가입 이전에라도 부분적으로 먼저 施行하고자 하는 意志를 표출한 것이다. 아직 어떤 품목들이 관세인하 대상인지에 대한 정확한 內容이 나오지 않고는 있다. 그러나 당시 92년 基準品目 平均關稅率 평균치 기준 39.9%를 18.6% 수준으로 내릴 것을 宣言한 바 있어, 1996년도의 조치가 WTO 加入과 관련된 관세율인하쪽에는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금번 관세율인하 조치계획 발표로 中國은 자체 계획에 의해 漸進的인 市場開放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對外的으로 宣稱하고 있다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 이는 現在 추진중인 WTO 가입과 관련된 관세율인하에 대한 産業 保護措置를 실험할 수도 있다는 잇점이 있다.

### Ⅲ.1.3.2 主要 關稅率 引下措置

- ① 91. 11. 12 : 원재료성 상품, 농약류, 기계설비, 식품류 등 225개 品目에 대한 關稅率 引下(92. 1. 1 시행). 산술평균 관세율 43%, 무역량 가중 평균 관세율 32%.
- ② 92. 3. 14 : 85년 이래 輸出入 均衡을 위해 168개 品目에 대해 부과해 오

16) 이는 나중에 96. 4. 1로 수정되었음.

17) 중국은 94년 8월말 WTO가입을 위한 最終 關稅讓許綜合 offer를 제시하였음. 이에 의한 品目平均關稅率은 18.6%임. 중국이 제시한 18.6%의 品目平均關稅率은 중국이 희망하는 개발도상국 지위획득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이 關稅率 수준은 중국의 WTO가입이 일단 좌절됨으로써 아직 적용되고 있지는 못함.

던 輸入調節稅를 폐지하면서 카메라, 소형자동차, 칼라TV 등 해당품목의 關稅率은 인상함. 品目에 따라 10-37.5%의 실질관세를 인하효과가 있었으며 산술평균 관세율이 39.9%, 무역량 가중평균 관세율이 21.9%라고 發表함(93. 4. 1 시행).

- ③ 93. 11. 17 : 2,898개 品目에 대해 關稅率을 인하 조치하였는 바, 이는 UR 협상 및 APEC 시애틀회의를 앞두고 여건조성을 위한 措置로 보였으며, 이 조치로 中國의 평균 관세율은 종전의 39.9%에서 36.4%로 무역량 가중평균 관세율은 21.9%에서 약 20%로 引下되었다고 발표함.
- ④ 93. 12. 30 : 농약 등 농업관련제품, 공업관련 원자재, 기계전자제품의 부품 등 234개 品目에 대해 '94. 1. 1~12.31간 暫定的으로 관세율을 추가 인하함. 이와같은 잠정관세율 제도의 실시는 '94.1.1 실시한 새로운 外換管理制度와 함께 발표된 것으로 換率單一化가 수입상품가격에 미치는 否定的인 영향을 減少시키기 위한 조치임.<sup>18)</sup>
- ⑤ 94. 1. 6 : 수입자동차에 대한 關稅率을 引下 措置하였으며 1.1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함. 이 조치로 소형자동차의 경우 稅率이 180% → 110%(38.8% 인하)로, 중대형 자동차의 경우 220% → 150%(31.8%인하)로 각각 引下되었으며, 이는 開放地域의 投資進出企業에 대한 자동차 면세수입권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와 자동차 密輸防止를 위한 조치였음.
- ⑥ 96. 4. 1 : 앞의 강택민 주석의 오사카 방문과 관련 35%의 關稅引下가 예상되고 있으나 具體 內容은 미확정.

---

18) 換率單一化 措置로 수입관세 징수시 적용하는 환율이 종전 1\$ : 5.7RMB에서 1\$ : 8.7RMB로 評價切下되어 실질적 관세부담 인상효과가 있었음.

〈表 7〉 關稅率 構造變化 推移(稅率帶別 品目數 및 構成比)

關稅率帶	93. 1. 1	94. 1. 1	94. 8 提示(案)
1-10%	495(7.8)	589(9.3)	2399(38.0)
10-30%	2429(38.4)	2849(45.1)	3433(54.3)
30-60%	1793(28.4)	1713(27.1)	315(5.0)
60-	1479(23.4)	1119(17.7)	174(2.8)
總 計	6321	6321	6321

93년말 WTO가입추진과 관련, 關稅率을 대폭적으로 引下한 결과 1-30%대의 저관세율의 비중이 93. 1. 1의 46.2%에서 94. 1. 1의 54.4%로 올라간 반면 30% 이상의 고율 관세율 부과품목이 51.8%에서 44.8%로 그 比重이 낮아지는 관세율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關稅率構造는 WTO가입이 성사되는 경우 훨씬 저관세율 구조로 移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9)</sup> 즉 關稅率 30%미만이 전체

〈表 8〉 關稅率 細分類 構造

	農 産 物		非農産物		總 計	
	現 行	Offer	現 行	Offer	現 行	Offer
0 ~ 10%	244	1255	320	1144	564(9.0)	2399(38.3)
~ 20%	837	916	920	831	1757(28.0)	1747(27.9)
~ 30%	437	526	351	1160	788(12.6)	1686(26.9)
~ 40%	308	42	255	181	563(9.0)	223(3.6)
~ 50%	339	16	189	59	528(8.4)	75(1.2)
~ 60%	259	9	301	8	560(8.9)	17(0.3)
~ 70%	184	48	189	0	373(6.0)	48(0.8)
~ 80%	114	11	338	2	452(7.2)	13(0.2)
~ 90%	13	0	2	0	15(0.2)	0
~100%	38	0	512	53	550(8.8)	53(0.8)
100% +	50	0	61	0	111(1.8)	0
	2828	2823	3438	3438	6321	6321

註 : ( )안은 %임.

19) 〈表 8〉 관세율 세분류구조 참조.

의 92.3%정도를 차지할 것이다.

특히 關稅率 세분류구조에 의하면 中國이 WTO에 가입하는 경우, 관세율 100% 이상품목은 전혀 없어지게 되며 대부분이 關稅率 30%미만으로 남게 된다. 한가지 특기할만한 사실은 農産物보다 非農産物分野에서 고관세율 품목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즉 일부 품목에 대한 中國의 産業保護意志가 반영되고 있다.

### Ⅲ.1.3.3 關稅率 構造特徵

中國의 關稅率構造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表 9>에 貿易品 대분류기준에 따라 관세율을 계산해 보았다. 즉 各 品目(대분류 기준)마다 평균 300개 商品(세분류 기준)이 있는데, 이를 평균한 세율이 평균관세율란에 표시되어 있다. 현행 中國의 관세율표에 따라 계산한 단순평균 관세율은 36.4%로 나타나고 있다. 97개 중분류에 의한 무역량 가중평균치는<sup>20)</sup> 29.3%로 나타나고 있으며, 21개 대분류 기준으로는 33.0%이다. 이러한 수치는 中國이 공식 발표하고 있는 單純平均關稅率 36.4% 및 加重平均値(약 20%)에 다소의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WTO가입과 관련 일반 開途國의 平均關稅率 35%(가중평균치 15-16%대)에는 못미치는 실정이다.

21個 大分類 기준 관세율구조로 보아 30%미만으로 關稅率이 비교적 낮은 품목은 광산품,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및 그제품, 나무 및 그제품, 펄프, 철 및 그 금속,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이 있다. 반면에 식품, 방직원료 및 그제품, 모자, 우산 등 잡제품, 차량, 항공기, 무기, 탄약 그리고 잡항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50% 이상으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加重 平均의 경우 가중치의 차이때문에 정확한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20) 가중 평균치의 경우 關稅品目 6,321개의 輸入比重置로 가중평균한 것이 아니고 97個 中分類 品目으로 압축한 품목의 수입비중으로 계산한 결과 中國측의 발표와 상당한 편차가 있게 됨.

〈表 9〉 現行 品目別 平均 關稅率表(21개 大분류 기준)

	平均 關稅率		輸入比重(93년 수입기준)				
	우대	일반	전체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전 체	36.4	57.6	100	100	100	100	100
1. 산 동 물	42.9	62.9	0.5	1.0	0.2	0.1	0.1
2. 식물산품	38.6	58.9	1.2	3.6	0.1	0.0	0.0
3. 동식물유	32.4	50.6	0.5	0.1	0.0	1.0	0.0
4. 가공식품	56.7	81.2	0.8	0.9	0.2	0.1	0.2
5. 광 산 품	21.5	34.9	6.9	3.6	1.0	0.1	6.4
6. 화학공업제품	23.6	38.5	5.4	8.8	3.6	4.8	6.3
7. 플라스틱 및 그제품	29.3	47.3	5.3	5.1	4.5	1.4	11.4
8. 가 죽	48.7	73.2	1.8	1.2	0.4	0.2	6.6
9. 나무 및 그제품	27.9	47.4	1.5	1.7	0.0	0.1	0.3
10. PULP	28.7	45.9	2.0	3.5	0.9	1.0	3.0
11. 방직원료 및 그제품	59.5	96.2	9.3	2.1	7.2	1.3	18.3
12. 모자, 우산 등 잡제품	73.3	111.3	0.5	0.1	0.1	0.0	0.7
13. 시 멘 트	34.9	63.4	0.5	0.7	0.7	0.4	0.3
14. 보석 및 귀금속	36.8	58.8	0.8	0.5	0.0	0.2	0.0
15. 철 및 그금속	23.5	36.3	15.9	5.7	18.6	11.5	23.4
16. 기계 및 그 전기설비	27.0	44.9	34.5	36.1	46.0	55.3	20.1
17. 차량, 항공기	54.9	94.2	8.4	18.2	10.9	18.5	1.2
18. 정밀기계	30.3	49.4	3.3	6.6	5.1	4.0	0.5
19. 무기 및 탄약	60.0	80.0	0.0	0.0	0.0	0.0	0.0
20. 잡항제품	59.9	89.5	0.8	0.5	0.6	0.1	0.9
21. 예술작품	30.0	50.0	0	0	0	0	0
가중평균치(1)			33.0	33.9	32.3	32.4	34.4
가중평균치(2)			29.3	25.1	32.2	31.9	30.7

註 : 1. 수입비중 전체는 중국 전체수입액에서 각 품목의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율

2. 국별 수입비중은 각국의 대중수출액에 대한 각 품목별 비중

3. 가중평균치(1) : 21개 대분류에 의한 무역량 가중 평균관세율

4. 가중평균치(2) : 97개 중분류에 의한 무역량 가중 평균관세율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의 對中 輸出比重으로 계산한 加重平均値에 따르면 미국이 25.1%로, 일본 32.2%, 독일 31.9%, 한국 30.7% 등에 비해 훨씬 낮은 점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의 중국 關稅率 構造調整이 중국의 市場開放에 가장 적극적으로 미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된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Ⅲ.1.3.4 實效關稅率 評價

〈表 10〉

實效關稅率 推移

(단위 : %)

	1994	1992	1990	1985	1980
중 국	3.3	4.8	6.2	16.3	11.2
한 국	3.4	5.2	5.9	6.6	5.4

1994년의 경우 關稅收入을 輸入額으로 나눈 중국의 實效關稅率은 3.3%로서 1985년 이후 계속 하락세에 있다. 이처럼 實效關稅率이 품목 평균 관세율치나 가중평균관세율치를 훨씬 밑돌고 있는 이유는 中國이 改革, 開放政策의 추진과 함께 많은 경우에 있어 “0 稅率”을 적용하거나 각종 관세 감면조치를 해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특히 現 中國의 實效關稅率은 1994년 기준시 우리나라의 3.4%보다 오히려 낮다는 점이 흥미롭다.

Ⅲ.1.3.5 향후 關稅率 調整 展望

중국은 현재 WTO가입 추진과 관련, 비농산품에 대한 품목당 關稅率을 WTO 가입시 원칙적으로 40%이내, WTO가입후 5년이내 35%이내 등으로 각각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 한편, 농산품의 경우에도 매 품목당 關稅率을 평균 10%이상 인하할 계획으로 있다. 우선 〈表 11〉은 지난 94. 8 GATT가입(복귀)과 관련, 제시한 최종 offer list에 의거한 관세율 구조이다. 이미 중국은 EU, 일본, 캐나다, 호

〈表 11〉 中國의 細分類 關稅率 構造 및 各國의 輸入構造

품 목	HS Code	관세율		각국의 품목별 대중 수출비중					중국 수출품의 품목비중
		현행	제안	한국	일본	EU	미국	세계	
산 동물	1	22.14	6.43	0.00	0.00	0.02	0.06	0.02	0.39
육과 식용설육	2	51.05	21.58	0.00	0.02	0.08	0.41	0.07	0.52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3	36.03	15.58	0.23	0.46	0.13	0.43	0.50	1.50
낙농품 조란 천연꿀	4	60.00	25.79	0.00	0.00	0.15	0.05	0.07	0.13
다른 류에 분류 안된 동물성 생산품	5	45.76	15.24	0.04	0.02	0.04	0.06	0.04	0.45
산 수목과 기타 식물 및 인경 뿌리	6	46.19	16.81	0.00	0.00	0.01	0.00	0.00	0.02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7	47.22	18.50	0.00	0.00	0.00	0.02	0.01	1.31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8	56.39	27.97	0.04	0.00	0.00	0.05	0.06	0.34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9	49.676	20.23	0.00	0.01	0.00	0.00	0.01	0.38
곡물	10	0.00	33.56	0.00	0.00	0.00	2.0	1.09	1.27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11	50.00	26.76	0.00	0.01	0.04	0.0	0.03	0.07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식물	12	30.97	12.90	0.03	0.02	0.01	0.3	0.11	1.06
락 검 수지 및 기타 식물성 액즙	13	32.95	12.10	0.01	0.01	0.01	0.0	0.02	0.03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	14	40.36	15.18	0.00	0.00	0.00	0.0	0.03	0.04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 분해 생산물	15	46.98	27.32	0.01	0.02	1.61	0.7	1.58	0.41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 동물	16	70.00	26.33	0.00	0.00	0.00	0.0	0.01	0.64
당류와 설탕과자	17	65.43	44.29	0.21	0.01	0.02	0.0	0.39	0.30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	34.29	14.43	0.00	0.00	0.01	0.0	0.04	0.03
곡물 분 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19	58.33	29.17	0.02	0.01	0.01	0.0	0.03	0.14
채소 과실 견과류 또는 식물 조제품	20	61.27	27.82	0.00	0.00	0.01	0.0	0.02	0.67
각종 조제 식료품	21	73.53	37.06	0.01	0.10	0.02	0.0	0.06	0.13
음료 알콜 및 식초	22	109.57	52.39	0.01	0.01	0.03	0.0	0.03	0.31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유물	23	21.07	6.18	0.01	0.08	0.05	0.20	0.30	0.37
담배와 제조한 담배대용물	24	104.55	40.00	0.00	0.00	0.01	0.0	0.03	0.57
소금 황 토석류 석고 석회와 시멘트	25	30.32	10.44	0.02	0.11	0.08	0.0	0.13	0.70
광 슬래 및 회	26	7.19	3.17	0.01	0.02	0.03	0.02	1.16	0.08
광물성 연료, 광물유와 이들의 증류물	27	17.67	8.44	3.15	0.45	0.31	1.18	3.49	3.36
무기화학품 및 귀금속 방사성 원소	28	21.23	8.97	0.26	0.18	0.30	0.33	0.49	1.12
유기화학품	29	20.15	9.05	5.31	2.18	2.91	2.21	1.86	1.85
의료용품	30	22.33	9.93	0.01	0.08	0.48	0.11	0.18	0.40
비료	31	6.00	4.82	0.18	0.01	0.81	5.85	1.68	0.06
유연 또는 염색엑스, 탄닌과 유도체	32	32.94	12.10	1.02	0.45	0.41	0.35	0.61	0.45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	33	90.24	31.71	0.01	0.02	0.05	0.08	0.04	0.18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세제	34	54.07	21.52	0.15	0.24	0.12	0.21	0.19	0.12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효소	35	37.40	15.57	0.14	0.10	0.15	0.07	0.17	0.03

品 目	HS Code	關稅率		各國의 品目別 對中 輸出比重					中國 輸出品의 品目比重
		현행	제안	한국	일본	EU	미국	세계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36	54.23	16.15	0.00	0.00	0.00	0.01	0.00	0.13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37	40.61	20.47	0.00	0.17	0.08	0.17	0.09	0.04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	25.64	10.22	0.39	0.61	0.80	0.97	0.71	0.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37.40	18.10	12.50	4.73	2.10	4.54	5.33	2.20
고무와 그 제품	40	30.38	17.19	0.48	0.50	0.34	0.19	0.67	0.38
원피와 그 가죽	41	28.08	13.82	7.41	0.30	1.00	1.15	1.72	0.28
가죽, 마구 여행용구 핸드백	42	77.00	28.48	0.17	0.02	0.02	0.01	0.06	3.42
모피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43	86.67	26.19	0.19	0.03	0.46	0.17	0.17	0.28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44	29.08	12.51	0.54	0.05	0.08	0.76	1.41	0.85
코르크와 그 제품	45	22.00	10.86	0.00	0.00	0.02	0.00	0.01	0.00
짚 에스파르트 기타 조물재료	46	76.00	25.54	0.01	0.00	0.00	0.00	0.00	0.50
목재펄프 기타 섬유질 펄프	47	2.00	1.00	0.01	0.01	0.08	1.15	0.43	0.00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48	35.57	15.67	3.37	0.90	0.90	2.55	1.77	0.51
인쇄서적 신문 회화 및 기타인쇄물	49	32.00	12.80	0.08	0.09	0.16	0.10	0.11	0.10
견	50	81.90	21.47	0.31	0.11	0.01	0.01	0.17	1.04
양모 섬유모 조수모 마모사 직물	51	56.89	24.34	0.58	0.90	0.46	0.06	1.21	0.75
면	52	48.52	20.12	1.32	0.98	0.09	4.01	2.18	2.67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직물	53	33.72	14.22	0.27	0.07	0.18	0.01	0.19	0.46
인조필라멘트	54	71.55	29.85	6.45	2.24	0.15	0.99	2.47	0.50
인조스테이플섬유	55	82.91	31.64	8.23	2.00	0.70	0.75	2.21	1.71
워딩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끈	56	65.16	25.29	0.75	0.28	0.05	0.06	0.29	0.14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	57	93.85	30.00	0.01	0.01	0.01	0.09	0.03	0.51
특수 직물 섬유직물 레이스 자수포	58	80.15	27.46	0.82	0.32	0.05	0.04	0.39	0.32
침투 도포 피복 또는 방직용 직물	59	51.25	20.65	1.65	0.20	0.06	0.07	0.72	0.12
메리야스 편물과 뜨게질 편물	60	83.33	28.33	1.32	0.34	0.02	0.03	0.71	0.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뜨게질)	61	92.75	28.79	0.10	0.03	0.02	0.02	0.14	5.22
의류 부속품(메리야스 뜨게질 제외)	62	88.67	29.44	0.45	0.71	0.04	0.03	0.36	12.41
제품으로 된 방직용 의류 세트	63	79.78	27.64	0.03	0.03	0.01	0.02	0.04	1.81
신발류 각반 및 이들 부분품	64	78.62	30.34	0.81	0.03	0.05	0.05	0.28	4.99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	-	-	0.01	0.01	0.00	0.00	0.01	0.26
신류 지팡이 스트스틱	66	100.00	30.00	0.00	0.01	0.00	0.01	0.08	0.38
조제우모와 솜털 및 그 제품	67	-	-	0.04	0.03	0.00	0.01	0.02	0.47
석 플라스틱 시멘트 석면 운모	68	43.76	19.93	0.05	0.09	0.29	0.18	0.13	0.40
도자제품	69	59.50	25.17	0.03	0.10	0.29	0.23	0.14	0.93
유리와 유리제품	70	49.91	22.09	0.17	0.68	0.18	0.35	0.36	0.32

品 目	HS Code	關稅率		各國의 品目別 對中 輸出比重					中國 輸出品의 品目比重
		현행	제안	한국	일본	EU	미국	세계	品目比重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반귀석	71	31.38	15.37	0.03	0.05	0.52	0.67	0.89	1.24
철강	72	14.10	7.93	11.10	9.37	2.88	0.95	7.17	1.15
철강의 제품	73	36.91	16.01	1.75	3.42	2.67	0.99	2.05	1.62
동과 그 제품	74	35.31	12.67	0.64	1.05	0.58	0.92	1.04	0.26
니켈과 그 제품	75	18.42	5.89	0.01	0.06	0.03	0.01	0.03	0.10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	29.54	13.00	0.62	0.45	0.38	0.68	0.62	0.36
연과 그 제품	78	23.18	8.27	0.01	0.01	0.00	0.00	0.01	0.09
아연과 그 제품	79	25.00	7.25	0.04	0.06	0.07	0.07	0.09	0.22
주석과 그 제품	80	27.92	9.33	0.02	0.02	0.01	0.01	0.03	0.17
기타 비금속 시멘트 이들의 제품	81	19.40	6.95	0.00	0.06	0.03	0.03	0.04	0.26
비금속제의 공구 도구 이들 부분품	82	35.49	17.32	0.07	0.17	0.14	0.14	0.14	0.80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83	55.41	18.83	0.50	0.17	0.08	0.08	0.25	0.61
원자로 보일러와 기계 및 부분품	84	28.46	14.25	9.73	24.67	46.13	21.24	21.71	4.66
전기기와 그 부분품	85	40.46	19.61	2.05	21.85	14.68	11.16	14.31	11.66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 부분품	86	8.37	4.54	0.02	0.01	0.37	0.13	0.09	0.53
철도 궤도 이외 차량과 부분품	87	62.00	29.74	1.62	9.57	6.50	3.42	4.19	1.19
항공기와 우주선 및 이들 부분품	88	6.00	2.80	0.00	0.00	2.26	20.16	3.01	0.16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	13.95	8.50	0.82	1.95	3.05	0.13	1.16	0.46
광학, 사진용, 영화용, 측정기기	90	27.25	13.94	0.44	3.15	2.67	4.63	2.18	1.28
시계와 그 부분품	91	64.44	28.56	0.11	1.91	0.05	0.20	0.94	1.58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	54.78	27.39	0.01	0.15	0.00	0.00	0.05	0.09
무기 총포탄 및 이들 부분품	93	60.00	29.41	0.00	0.00	0.00	0.00	0.05	0.16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 쿠션	94	74.00	26.32	0.06	0.15	0.20	0.20	0.22	2.04
완구 유희용구 운동용구	95	55.74	24.64	0.31	0.25	0.04	0.23	0.28	3.90
잡품	96	76.80	28.91	0.61	0.29	0.03	0.03	0.27	0.85
예술품 수집품과 골동품	97	28.57	14.29	0.00	0.00	0.00	0.00	0.00	0.04
분류되지 않은 상품	98	-	-	0.00	0.00	0.00	0.00	0.02	0.00

주, 뉴질랜드, 터키, 체코, 슬로바키아 등과 關稅讓許 兩者協商을 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 및 미국과도 關稅讓許協商을 거친 바 있다. 따라서 이들 양자협상의 결과를 1차적으로 반영시키고, 동시에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製品 및 先進技術製品

에 대해 관세율을 하향 조정한다는 중국정부 자체의 원칙을 가미, 관세율 조정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우선 <表 11>에 근거하여 中國의 향후 關稅率 構造變化 방향을 분석해 보기로 하자. <表 11>은 중국이 94. 8 GATT가입 실무작업반에 제시한 포괄적인 品目別 稅率을 97個 中分類 단위에서 나타낸 것이다. 먼저 향후에도 關稅率이 높게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 품목 등을 정리해 보았다. <表 12>와 <表 13>은 관세율 최고 10개 品目과 關稅引下率 최저 10개 품목을 나타내고 있다. 관세율 최고품목은 음료, 설탕·과자류, 담배류, 각종 조제식료품, 식량 등 반수 이상이 식품이거나 기호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화장품 등 일부 사치품과 섬유, 우산, 운동화 등 주력 수출품도 포함되어 있다. 즉,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큰 식료품과 주력 수출산업의 육성을 위한 의도가 크게 반영되어 있다. 또 한가지 產業保護를 반영하는 關稅引下率 최저 10개 품목을 살펴 보자. 비료, 선박류, 철강, 철도·차량 등 원래 低關稅率 品目이 있는가운데 설탕류, 식음료, 신발, 밀가루, 전분 등 식품류에 대한 關稅率 引下幅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表 12> 關稅率 最高 10個 品目

순위	품목명(HS번호)	관세율	인하폭	수입비중 (%)	수출비중 (%)
1	음료(주류 포함) (22)	52.4	52.2	0.03	0.31
2	설탕류, 과자류 (17)	44.3	32.3	0.38	0.30
3	담배류 (24)	40.0	61.7	0.03	0.57
4	각종 조제 식료품 (21)	37.1	49.6	0.06	0.13
5	식량 (10)	33.6	44.1	1.09	1.27
6	화장품 등 (33)	31.7	64.9	0.04	0.18
7	인공섬유 (55)	31.6	61.8	2.21	1.71
8	운동화 등 (64)	30.3	61.4	0.28	4.99
9	우산 등 (66)	30.0	70.0	0.08	0.38
10	카페트 (57)	30.0	68.0	0.03	0.51

〈表 13〉

關稅引下率 最低 10個 品目

순위	품목명 (HS번호)	인하폭	관세율	수입비중 (%)	수출비중 (%)
1	비료 (31)	19.6	4.8	1.68	0.06
2	설탕류 (17)	32.3	44.3	0.39	0.30
3	선박류 (89)	39.1	8.5	1.16	0.46
4	식용유 (15)	41.8	27.3	1.58	0.41
5	고무 (40)	43.4	17.2	0.67	0.38
6	철강 (72)	43.8	7.9	7.17	1.49
7	식량 (10)	44.1	33.6	1.09	1.27
8	철도·차량 (86)	45.8	4.5	0.10	0.53
9	밀가루, 전분 등 (11)	46.5	26.8	0.03	0.07
10	광학기계 (90)	48.8	13.9	2.18	1.28

한편, 〈表 14〉와 〈表 15〉는 關稅率最低 10個 品目 및 關稅引下率 最高 10대 품목을 정리하고 있다. 관세율이 아주 낮아지는 것으로는 Pulp, 비행기, 항공기, 광석, 철도차량, 비료, 니켈류, 사료, 산동물, 기초 비금속류, 아연과 그 제품 등으

〈表 14〉

關稅率 最低 10個 品目

순위	품목명 (HS번호)	관세율	인하폭	수입비중 (%)	수출비중 (%)
1	Pulp (47)	1.0	50.0	0.43	0.01
2	비행기·항공기 (88)	2.8	53.3	3.01	0.16
3	광석 (26)	3.2	56.0	1.16	0.08
4	철도차량 등 (86)	4.5	45.8	0.10	0.53
5	비료 (31)	4.8	19.6	1.68	0.06
6	니켈류 (75)	5.9	68.0	0.03	0.10
7	사료 (23)	6.2	70.7	0.30	0.37
8	산동물 (1)	6.4	71.0	0.02	0.39
9	기타 기초 비금속류 (81)	7.0	64.2	0.04	0.26
10	아연과 그 제품 (79)	7.3	71.0	0.09	0.22

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關稅率 引下幅이 큰 품목은 실크, 아연과 그 제품, 산동물, 사료, 화학, 우산류 등 잡화, 가죽류, 의류 부속품, 카펫, 니켈류 등이었다. 이러한 품목들은 대체로 중국정부에서 국민경제발전에 긴요한 품목으로 처리, 수입을 장려할 필요가 있는 품목이거나, 市場을 완전히 開放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表 15〉 關稅引下率 最高幅 10個 品目

순위	품목명(HS번호)	인하폭	관세율	수입비중 (%)	수출비중(%)
1	실 크 (50)	73.8	21.5	0.17	1.04
2	아연과 그 제품 (79)	71.0	7.3	0.09	0.22
3	산동물 ( 1)	71.0	6.4	0.02	0.39
4	사 료 (23)	70.7	6.2	0.30	0.37
5	화 약 (36)	70.2	16.2	0.00	0.14
6	우산류 등 잡화 (66)	70.0	30.0	0.08	0.38
7	가죽류 (43)	69.8	26.2	0.17	0.28
8	의류부속품 (61)	69.0	28.8	0.14	5.22
9	카펫 (57)	68.0	30.0	0.03	0.51
10	니켈류 (75)	68.0	5.9	0.03	0.10

### Ⅲ.2 中國의 海外 現地投資

中國의 競爭力 提高와 관련 또 한가지 살펴보아야 할 변수는 海外現地投資에 대한 변화이다. 中國業體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는 그렇게 많지 않다. 중국은 海外企業體의 중국내 진출(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통계치를 밝혀온 바 있다. 이는 改革·開放政策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서의 의미도 있거니와 홍보의 필요성이 충분히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對外經濟貿易年鑑」에 매년 外國人 海外投資誘致 상황을 허가기준 및 도

착기준으로 金額, 産業, 地域分布 등이 종합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반면에 중국 업체의 해외진출관련 통계치가 「對外經濟貿易年鑑」에 발표된 것은 92년 부터였다. 통계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시간은 물론이거니와 통계치의 질로 보아서도 중국의 외국업체 유치현황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었다. 단지 許可基準과 地域分布만이 나와있을 뿐이다.

중국업체의 海外進出은 改革·開放이 막 시작되던 1979년 부터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개방초기에는 그리 활발하지 못하였다. 즉, 1979~83년간에는 매년 평균 10여개 업체만이 해외로 진출하였다. 물론 單純貿易業體까지도 포함하는 경우 업체수가 다소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貿易業體를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별달리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改革·開放이 점차 활기를 띠던 1984년 47개 업체가 진출한 것을 계기로, 이후부터는 매년 100여개 업체가 진출한 바 있으며, 1988년 164개 업체, 1989년 119개 업체, 1990년 157개 업체, 1991년 207개 업체, 1992년 355개 업체, 1993년 294개 업체, 1994년 106개 업체 등이 진출한 바 있다. <表 16>에 나타난 바처럼, 1994년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총 1763개 업체가 진출하여 17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sup>21)</sup>

### Ⅲ.2.1 金額推移

94년말 현재 중국의 海外現地投資는 17억 5800만 달러(누계 허가기준)이다. 이 額數는 94년말 현재 중국이 유치한 海外直接投資 總額 3109억 2100만 달러(누계

21) 한편, 92년말 현재 해외에 진출중인 1053個 貿易業體數는 이 통계에서 제외되며, 홍콩, 마카오 지역 진출업체까지 포괄하는 경우 總 海外進出 業體數는 4117個社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이 경우 중국측 海外投資契約額은 총 18억 5천만불로서 그중 貿易業體 2억 6000만 달러, 非貿易業體 15억 8000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음.

허가기준)의 0.6%에 불과하다.<sup>22)</sup> 정확한 통계가 없어 변화추이를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91년부터 94년까지의 추세로 보아서는 90년대 들어 오히려 감소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즉 91년 3억6700만 달러에서 92년 1억 9500만 달러, 93년 9600만 달러, 94년 7100만 달러 등 每年 海外投資가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해외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뚜렷하지 않으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國內景氣가 워낙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해외 진출에 대한 장점(merit)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것이 첫째요인이다. 최근 2~3년간 中國經濟는 年平均 10%이상의 실질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資金의 投資效率側面에서 국내 투자가 海外投資에 비해 훨씬 더 매력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부 국내 기업체들이 國內景氣가 호황인데 따라 해외에 예치해 두었던 자금마저 국내로 유입시키고 있는 현상과도 연관성이 있다.

둘째, 中國業體의 國際化 경험미숙으로 海外投資에 대한 본격적인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즉, 현재까지 海外投資에 참여한 대부분의 업체들은 大型 國有企業體들로서 정부지원하에 이루어진 바 있다. 따라서 수익성을 그다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 투자한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에는 투자에 대한 수익성 및 손익책임이 강조되고 그러다 보니 해외투자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경우 독자적인 투자가 다소 위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22) 실제 資金投入規模에 대해서는 중국측의 통계가 전무하여 알 수 없음. 그러나 중국이 유치한 海外直接投資 도착자금이 유치자금의 31.6%에 불과하였다는 예로 보아서는 중국이 해외에 直接投資한 金額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그런데 중국의 경우 有關企業의 대부분이 國有企業體인 관계로 許可金額과 실제 投資金額이 큰 편차는 없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23) <表 16> 참조바람.

〈表 16〉

## 中國의 現地投資 推移(허가기준)

단위 : 백만\$

국가 년도	1990년 누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4년 (누계)
홍콩	99(116)	-	29(1)	7(21)	-(1)	135(139)
마카오	16(24)	-	-	-	-	16(24)
일본	8(44)	1(9)	3(18)	1(4)	-	13(75)
필리핀	4(9)	1(3)	-(4)	1(7)	2(2)	9(25)
태국	34(61)	4(12)	7(22)	3(13)	6(14)	55(122)
말레이시아	9(13)	1(5)	3(13)	6(16)	1(2)	21(49)
싱가폴	7(18)	2(7)	2(10)	3(9)	2(4)	15(48)
인도네시아	-	-(1)	6(11)	4(11)	4(4)	14(27)
방글라데시	4(10)	-(1)	3(10)	1(3)	-	8(25)
터키	10(2)	1(2)	-	-(1)	2(2)	9(7)
아랍에미리트		4(12)	1(2)	1(2)	-	7(16)
나이지리아	7(11)	-	-(1)	4(5)	1(2)	12(19)
자이레	8(4)	-	-	-	1(1)	9(5)
모리셔스	6(14)	-	-(1)	-(1)	-	7(16)
독일	7(18)	-(2)	1(4)	-(1)	1(3)	9(28)
프랑스	7(6)	1(1)	1(4)	-	-	9(12)
영국	4(6)	-	1(1)	-	1(1)	6(8)
C I S	27(33)	22(66)	40(86)	6(35)	1(5)	96(225)
멕시코	1(4)	1(2)	8(11)	5(8)	-	16(27)
브라질	10(7)	1(3)	1(3)	-	1(3)	13(16)
칠레	21(4)	-	-(1)	-	-	21(5)
버뮤다	5(2)	-	-	-	-	5(2)
캐나다	53(36)	307(12)	5(14)	3(10)	1(3)	370(75)
미국	289(112)	7(22)	12(32)	14(38)	6(14)	327(218)
호주	309(48)	3(8)	3(8)	7(18)	2(4)	324(86)
뉴질랜드	2(3)	1(1)	40(4)	1(3)	-	44(11)
PNG	6(4)	-(1)	1(3)	-(1)	-	7(9)
한국	-	5(2)	-(2)	-	2(5)	7(9)
총계	1029(801)	367(207)	195(355)	96(294)	71(106)	1758(1763)

註 : 괄호안의 숫자는 건수

資料 : 중국 대외경제무역연감 각년호 참조.

### Ⅲ.2.2 件當 規模推移

〈表 16〉에 나타난 통계에 따르면 總 投資件數가 1763건으로 중국의 海外現地 投資 規模는 건당 평균 100만 달러이다. 특히 연도에 따라서는 90년까지의 누계로 보아 건당 평균 129만 달러, 91년 177만 달러, 92년 55만 달러, 93년 33만 달러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94년 67만 달러로 다시 규모가 커지고 있다. 즉 최근으로 올수록 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소규모로 줄어들고 있음이 특기할 만하다.

### Ⅲ.2.3 地域別 分布

中國業體들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는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全世界 120個 國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海外現地投資는 대체로 캐나다, 미국의 北美地域(집중률 : 금액기준 40.9%), 호주(집중률 18.3%), 홍콩(집중률 8.0%), CIS(집중률 5.6%)로 집약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비중은 72.8%로서 전체의 2/3를 훨씬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海外現地投資가 이들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관에서 인가? 이에 대한 답은 당장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대체로 중국의 海外現地投資가 ① 자연자원 탐사, ② 시장개척을 위한 현지공장 투자가 크게 중시된 결과가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

### Ⅲ.2.4 業種分布

중국업체들이 주로 어느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공표되고 있지 않다. 다만 한 著書의<sup>24)</sup> interview기사에 따르면 중국업체들이 투자하고 있는 업종은 주로 임업, 수산업, 광업, 석유화학, 제철, 경공업, 전자·전기, 기

24) 中國對外開放通論, pp. 159-183 참조.

계, 부동산, 교통·운수, Engineering, Consulting, 금융·보험, 의료·위생, 여관·숙박업 등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자원개발 및 가공에 상당히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Ⅲ.2.5 現地 投資決定 要因

일반적으로 한 업체가 海外現地投資에 나서게 되는 동기는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海外投資 決定要因은 이론적으로나 실증적으로는 연구된 것이 많이 있다.<sup>25)</sup> 따라서 本 考에서 다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다만 중국의 경우 主要因이 어떠한가에 대한 검증을 시도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서도 지적한 바처럼 통계의 한계성 때문에 시원한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다. 가령 비교적 유관통계 습득이 용이한 진출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해당국가가 중국에 直接投資한 내용, 輸出·入規模, 輸出·入 商品構造(1차 상품인가, 2차 상품인가 여부)등과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개략적으로도 검토해보는 데는 커다란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따라서 <表 17>은 중국업체의 國別 直接投資 統計와 함께, 해당국가의 對中直接投資, 輸出·入 통계, 그리고 1차상품 교역비중 등을 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海外現地投資에 관한 개략적인 요인파악이 가능하다고 본다.

한편, 참고로 중국측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海外現地投資動機에 관한 동기를 소개하기로 한다. 중국업체가 해외에 진출하고 있는 동기는 餘他國家와 마찬가지로 자원개발형, 기술습득형, 수출선 개척 및 확보 등 다양한 목적이 있다.

25) 김시중(1993), 백권호(1992) 참조.

〈表 17〉

現地投資, 投資誘致, 交易關係表

단위 : 백만\$

국 가	현지투자 누계	직접투자유치		교역통계			
		허가기준	도착기준	총수출	1차상품 수출	총수입	1차상품 수입
홍 콩	135	73940	17270	32364	3388	9457	320
마카오	16	2810	590	667	128	132	2
일 본	13	2960	1320	21753	6139	26321	356
필리핀	9	630	120	476	172	272	178
태 국	55	107	230	1159	153	864	303
말레이시아	21	760	90	1118	359	1623	692
싱가폴	15	2950	490	2558	727	2482	1330
인도네시아	14	260	70	1052	363	1588	743
방글라데시	8						
터 키	13			185	25	464	8
아랍에미리트	7	20	10	865	30	37	15
나이지리아	12						
자이레	9						
모리셔스	7						
독 일	9	250	60	4761	383	7137	209
프랑스	9	240	140	1424	156	1939	42
영 국	6	1990	220	2414	131	1770	29
C I S	96			1581	546	3496	327
멕시코	16						
브라질	13	20		362	59	1059	662
칠 레	21			285	2	183	48
버뮤다	5						
캐나다	370	1180	140	1396	110	1831	611
미 국	327	6810	2060	21461	1073	13970	827
호 주	324	640	110	1488	53	2452	1089
뉴질랜드	44	40	10	188	14	316	58
P N G	7						
한 국	7	1560	370	4402	1547	7318	279
총 계	1758	111440	27510	121038	18427	115693	10804

### Ⅲ.2.5.1 資源開發 投資例

우선 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水産物, 木材, 鑛産物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되고 있다.

- 水産物 : 절강성을 중심으로 11개 성 및 지방도시가 舊소련, 남미, 인도네시아 등 20개 국가 및 지역에서 26개의 합작 수산물회사를 설립하고 있음. 이 회사를 통해 중국은 매년 10만톤 상당의 수산물을 국내로 반입하고 있음.
- 木 材 : 미국 및 캐나다지역에서 합작업체를 설립, 개발한 목재를 주로 국내로 반입하고 있는 실정임.
- 鑛産物 : 호주 및 브라질 등에서 각각 철광, 동광, 금광, 연철, 알루미늄광에 투자·개발 수입중에 있음. 특히 중국 야금 총공사가 호주에 투자, 88년 부터 개발하기 시작한 개발수입사업은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즉, 광물함유량 60%이상의 우량 광석을 연 100만톤 이상씩 국내로 반입하고 있으며, 조만간 국내 반입량을 1000만톤으로 늘릴 계획으로 있음.

### Ⅲ.2.5.2 技術습득형 投資例

이 유형의 海外現地投資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습득을 절실히 희망하고는 있으나 기술이전·습득이 쉽지 않은 업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기술선진국에 진출하여 아예 그 업종에 투자진출하는 경우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경제1선반 공장이 홍콩업체와 공동으로 미국에서 수치제어식 선반작동기술을 보유한 업체를 매입한 경우이다. 被買收業體는 선진기술 보유업체이나 경영이 순조롭지 못한 상태였다. 이외에도 中國化工總公司가 플로리다주에 인산비료공장을 매입한 경우와 수도강철이 압출 및 주조면에서 90년 역사를 지닌 미국의 마이스터 engineering

공장의 70%의 지분을 매입한 사례등이 거론되고 있다.

### Ⅲ.2.5.3 수출선 개척 및 확보형 投資例

이는 주력 수출국가나 지역의 무역제도상 대두된 애로상황을 타개하기 위한데서 부터 출발된다. 즉 주로 輸出Quota부족, 輸入禁止制度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중국의 상해지역은 방직품 수출전진기지인데 상당수의 업체들이 수출Quota가 부족하여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 업체들은 Quota회피 목적으로 주력수출시장인 EU市場에 인근해 있는 모리셔스에 공장을 설립하거나 미국 시장과 가까운 멕시코, 과테말라, 볼리비아 등지에 섬유업체를 매입·신설하고 있다. 즉 現地投資를 통해 EU나 미국시장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거나 신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규모는 다소 작으나 유명한 例로는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중국업체의 모기향 공장 운영이다. 중국의 복건성은 모기향 생산·수출기지로 유명하였다. 주로 방글라데시에 수출해 온 바 있는데, 방글라데시가 모기향 수입을 금지하자 복건성소재 업체들이 아예 방글라데시로 공장을 이전, 방글라데시내의 모기향 시장을 1년이라는 단기간내에 장악해 버렸다.

### Ⅲ.2.6 中國 國際信託投資公司(CITIC)의 海外進出 事例

上記 中國業體의 해외진출 동기, 업종, 성과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자료의 불비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對外開放, 改革의 간판기업체인 中國國際信託投資公司(CITIC : China International Trust and Investment Corporation)의 예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CITIC은 改革·開放의 상징기업이다. 同社는 1978년 등소평 선생이 改革, 開放政策을 채택했을 때 해외투자의 유치창구로서 國務院<sup>26)</sup> 통제를 받는 업체로 출범하였다. 개혁·개방과 역사를

같이 하는 同社는 전임회장이던 영의인이 국가부주석에 취임함으로써 더욱 유명해졌다.

### Ⅲ.2.6.1 CITIC의 海外現地投資 背景

CITIC은 중국의 開放政策 채택과 관련 대외창구의 하나이면서도 經濟構造改革 실험업체의 하나로 발족하였다.<sup>27)</sup> 회장에는 상해지역의 유명방직업체를 운영하던 민족기업가로서 중공정권이 수립된 뒤에도 대륙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던 영씨 가문의 장자이던 영의인이 취임하였다. CITIC은 영씨 개인적으로 대외개방적이던 절강성지역에서 유명 섬유업체를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미 세계와의 접촉이 많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CITIC자체의 설립목적에 걸맞게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CITIC은 발족 14년만인 93년말 현재 534개 業體<sup>28)</sup>를 거느린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다. CITIC이 海外 現地投資에 높은 관심과 실적을 갖게 된 배경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CITIC은 여타 국유기업과 달리 改革·開放政策 채택이후 발족됨으로서 출범초기부터 경제효율에 입각, 상대적으로 시장경제 체질이 강화된 경영이 가능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CITIC이 워낙 改革·開放의 상징성이 강하자 중국에 무지한 외국의 우수기업체들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우선 CITIC을 접촉하고 나서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PROJECT에 대한 합작, 참여기회가 많았다. 게다가 CITIC 내에는 고위인사 자제들이 다수 근무함으로써 전통적인 관계가 강조되는 중국사회에서 CITIC과의 관계강화를 먼저 희망하였다.

26) 우리나라의 총리실에 해당함.

27) 정식발족은 1979년 10월 4일 국무원산하 업체로 국유기업체임.

28) 이외에도 36개 CITIC은행 지점이 있음.

셋째, 上記와 같은 사실을 배경으로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국제사회에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게 되고 이에 따라 국내뿐 아니라 해외기채도 가능하였다. 1981. 2 동경시장을 통해 100억엔의 채권을 발행, 1949년 이래 중국업체로는 해외기채 1호를 기록한 것을 비롯, 1993년 7월 28일 뉴욕시장을 통해 2억 5천만 달러의 Yankee본드를 발행하게 되었다. 1993년말 현재 CITIC은 동경, 홍콩, 런던,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미국 등지에서 18종 이상의 화폐로 표시된 20억불 상당의 해외기채를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이다.

### Ⅲ.2.6.2 CITIC의 구체적 海外投資 事例

CITIC은 93년말 현재 대표적인 投資業體인 CITIC Hong Kong Holdings Ltd.을 제외하고서도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독일, 화란, 멕시코, 이태리, 브라질, 쿠웨이트, 아랍에미레이트, 태국, 아르헨티나, 홍콩, 마카오 등 24개 지역에 68개 투자업체를 보유하고 있다. 중요한 투자업체들은 다음과 같다.

- CITIFOR Inc. : 1984년말 미국의 워싱턴주에 있는 삼림지역에 투자, 목재의 상당부분을 중국으로 개발수입하게 되었다. 당시 1차적인 투자목적은 중국이 필요로 하는 원자재의 확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물론 나머지 잉여분들은 현지에서 처분하였다.
- CITIC Australia Pty. Ltd. : 1986년 CITIC은 1억 4000만 달러를 투입, 호주의 Portland Aluminium Smelter사 지분 10%를 매입하게 되었다. 동사는 당초 미국, 호주의 합작회사로서 중국의 最大 海外投資의 하나로 손꼽힌 바 있는데, 합작사들의 협력으로 계속해서 흑자를 내고, 세계유수의 알루미늄 제련 공장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CITIC Canada Inc. : 1986년 9월 CITIC은 4000만 달러를 투입, 캐나다의 British Columbia소재 Celgar Pulp Mill의 지분 50%를 확보하게 되었다. 3년만에 이 Project관련 채무를 상환한 바 있으며, 1990년 7억 캐나다 달러가 추

가로 시설개조 및 확장에 투자된 바 있다. 이 추가투자에 의한 시설은 1993년 완성, 현재 중국 최대 추가 Project로 가동중에 있다.

- CITISTEEL USA Inc. : 1988년 CITIC은 미국의 Delaware소재 Phoenix Steel Mill을 매입하였다. 동사는 선박건설 및 건축용 철판을 생산하는 기업체로 현재 정상궤도로의 진입중에 있다.
- CITIC HONG KONG(HOLDINGS) Ltd. : CITIC은 북경에 본사를 설립하고 나서 곧 이어서 HONG KONG에 지사를 설치, 부동산, 선박, 자동차부품, 종이, 의류, 정밀구조 및 Computer산업 등에 투자한 바 있다. 이를 모태로 1987년 CITIC HONG KONG사를 설립하고 투자전략도 공공 부문으로 수정하게 되어 있다. 이 결과
  - 1987년 Cathay Pacific Airways지분 12.5% 매입
  - Dragon Airlines Ltd. 지분 38.3%
  - Companhia de Telecomunicacoes de Macao and Hong Kong Telecommunications Ltd. 지분 20% 매입
  - 이외에도 1989년 Hong Kong Telecommunications Ltd. 지분 20%를 100억 HK달러에 매입하는 등의 사업이 있었다. 그러나 동사는 1991년 CITIC Pacific Ltd.로 이름을 바꾸게 된다.<sup>29)</sup>
- CITIC Trading Company : CITIC Australia Pty. Ltd.의 산하 회사로서 Singapore에 아태지역내에서의 중국제품<sup>30)</sup> 판매 확대차원에서 1993년 설립하였다. 동사는 일본의 국제적 유통그룹인 Yaohan International의 지분 10%를

29) 同 CITIC Pacific Ltd.은 1991년 Cathay Pacific Airways 지분 12.5%와 Companhia de Telecomunicacoes de Macau지분 20%를 매입하였음. 1991년 10월 70억 HK달러를 투입, 홍콩내 거대 무역회사이던 Heng Chong Enterprise Co. Ltd.의 지분 35%를 매입하게 되었음. 이후 1992년 나머지 지분을 전액 인수, Heng Chong은 CITIC의 계열사로 편입되게 되었음.

30) 주로 소비제품.

매입함으로써 Yaohan 그룹의 경영권내 제2위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또한 호주내 최대 유가공업체중의 하나인 Metro Meat사를 1억 호주달러에 매입하였다.

- C.H. China Investment Ltd. : 호주의 Hambros Australia Ltd.사와 합작으로 설립된 것으로 호주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 중국내 투자기금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중국의 증권시장에 호주자본이 유입되는 창구역할을 하고 있다.
- Thai-CITIC Machinery Company Ltd. : 태국내에서 중국제 차체를 사용, 자동차 조립생산을 하고 있다.

### Ⅲ.3 中國의 知財權 관련 制度整備

중국의 對外經濟관련 制度중 또 하나 중요한 것은 知財權관련 制度整備로 들 수 있다. 중국은 WTO가입과 관련된 분위기 조성과 對美關係 호전차원에서 知財權 관련 制度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온 바 있다. 知財權관련 問題는 특히 美-中 通商關係에 있어 貿易收支 赤字問題와 함께 갈등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가령 미국 國際知的財産權 聯盟(US IIPA : US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이 분석한 93년도 자료에서 중국이 영화분야 4,500만\$, 음반 4,500만\$, 컴퓨터 프로그램 2억 2,500만\$, 서적 1억\$ 등 총 4억 1,500만\$의 무역손실 (전체 추정손실의 11% 상당)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대만, 이태리, 한국에 이어 제4위 무역손실 초래국으로 평가하고 있다.

### Ⅲ.3.1 知財權관련 制度整備 現況

#### Ⅲ.3.1.1 國內 關係法 수정 · 제정

- 불공정경쟁 방지법(93. 9 제정, 93. 12 발효)
- 84. 3 제정 Patent Law(專利法) (92. 9 수정, 93. 1 발효)
- 국제저작권 보호협약 시행 규칙(92. 9 수정, 92. 9 발효)
- 컴퓨터 Software보호 조례(91. 6 제정, 91. 10 발효)
- 저작권법(90. 10 제정, 91. 6 발효)
- 상표법(82. 8 제정, 83. 3 발효)
- 기 타 : 영업비밀보호법, 과학기술실용화법, 반도체칩보호조례, 식물신품종 보호조례 등 제정 준비중

#### Ⅲ.3.1.2 國際協約 加入

- 1980. 6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 1985. 3 공업소유권에 관한 파리조약
- 1989. 4 반도체칩 보호조약
- 1989. 10 마드리드 국제상표 보호조약
- 1992. 10 문학 및 예술작품에 관한 베른협약
- 1992. 10 국제저작권협약 · 베른협약(UCC)
- 1993. 4 음반보호에 관한 국제협약(Geneva 협약)
- 1994. 1 국제특허협력협약

### Ⅲ.3.1.3 知的財産權 保護制度의 執行 現況

- 1993년말 현재 등록상표수 41만건
  - 국내상표 35만건, 외국상표 6만건
- 1993년말 현재 특허출원수 36만건
  - 국내 86.4%, 외국 13.6%
- 1986-1993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처리건수
  - 저작권 1,168건
  - 특허권 1,783건
  - 상표권 554건
- 상표위조범 처벌
  - 1992-1993년간 Mobil 상표위조범 등 556명 실행으로 처벌

### Ⅲ.3.2 최근 美·中 知財權紛爭 재연

美·中間에는 92년 양국 知財權관련 讓解覺書(〈表 18〉 참조)와 상기 각종 조치에 의해 다소 가라앉는 듯 하다가 95년초 레이저디스크의 무단복제 및 홍콩을 통한 對美 輸出등이 문제시 됨으로써 다시 쟁점으로 대두되었다. 미국은 중국의 知財權保護와 관련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즉, 중국의 知的財産權 보호수준을 보면, 世界 知的財産權 機構를 비롯하여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관련 주요 국제조약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고, 國內法規도 대체로 이러한 國際條約의 규범에 접근하여 규정되어 있어서 “制度”상으로만 보면 보호수준이 개도국의 일반 수준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의식에 있어서는 문화, 예술 등의 창작물이나 발명기술 등을 “재산”으로 인식하는 관념이 아직 미흡하다. 이는 우리나라 등 동양권에서의 공통적인 관습에서도 기인하지만, 특히 중국은 社會主義 體制下에서 문화, 예술품

〈表 18〉

美·中間 知財權 관련 讓解覺書(1992. 1)

- 중국 PATENT LAW의 수정 및 93. 1한 시행약속
- 미·중정부, 공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파리협약 및 국내법 준수 의무
- 중국정부, 92. 10한 문예작품 저작권 보호에 관한 Berne협약 가입이행 약속
- 중국정부, 93. 6한 Phonogram 보호협약(제네바협약) 가입 이행 약속
- 중국정부, 상기 조약가입에 따른 제반 국내조치 실시
- 중국정부가 MOU이행시, “Special 301조”에 의한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 해제

을 개인재산권이라기 보다 당이나 국가를 위한 창작물로 보는 관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많은 國際條約 및 國內法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실제로 知的財産權이 인정되고 보호되는 정도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미국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중국정부도 이러한 미국의 반발을 인식하여 “가짜 추방운동” 및 위조상품 방지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효과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 美·

〈表 19〉

知財權 관련 中國의 對美貿易報復 措置(95. 2. 4자)

- 1)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승인을 거쳐 미국산 각종 게임기, 게임카드, 카세트테이프, CD, 담배, 술, 화장품, 사진필름, 전화교환기에 대해 수입관세 100%를 추가 부과
- 2) 미국영화, TV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레이저디스크의 수입 잠정 중단
- 3) 미국음상제품협회(US Int'l Federation of Phonographic Industry), 국제지재권연맹(Int'l Property Alliance), 상업소프트웨어연맹(Business Software Alliance), 미국소프트웨어 출판협회와의 교역 협력관계 잠정 중단
- 4) 미국 음상제품 제조회사의 중국내 지사 및 사무소 신청접수 잠정 중단
- 5) 중국의 “화학, 약품행정 보호조례”에 따른 미국 화학, 약품제조회사의 신청접수 잠정 중단
- 6) 미국회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형자동차 합작사업 협상의 잠정 중단
- 7) 미국회사 및 소속 자회사의 중국내 투자회사 설립 신청접수의 잠정 중단

中 兩國은 知財權 紛爭으로 참여하게 대립하였으며, 미국의 유관수입금지 조치에 이은 중국의 보복조치<sup>31)</sup>가 있었다.

최근의 중국의 저항은 다소 강력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表 19>에 나타난 바처럼 중국의 태도는 상당히 단호하였다. 이와 동시에 中國은 知財權 保護를 위한 법률집행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까다로우며, 특히 중국과 같은 방대한 규모의 나라에서 그에 대한 완벽을 기하기란 더 더욱 어렵다는 점을 미국측에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協商過程에서 한때 미측은 중국의 사법심판제도 변경, 민사노동법 개정등을 요구한 바 있으며 중국은 이에 대해 입법 및 사법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크게 반발을 한 바 있다. 또한 중국은 미국이 소프트웨어의 知財權保護, 認證制度, 知財權 법률집행 권한 문제 등에 있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다. 특히 중국측은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는 가운데 95년초 미측이 知財權 保護 미흡과 관련, 對中 貿易報復措置를 취하자 즉각 <表 19>에 나타난 바처럼 국가주권 및 민족존엄을 유지를 명분으로 대응보복조치를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美間 經濟貿易 關係의 維持 및 發展은 양국의 근본이익에 부합된다는 인식에 도달, 양국은 결국 中·美間 전반적인 關係를 고려하여 마지막 순간에 양측이 극적인 타협에 도달하게 되었다.

중국의 對外관련 制度改革은 궁극적으로 競爭力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인 것으로 國際化와 직결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대두되고 있는 것이 중국이 “産業政策”의 골격을 세우고자 하는 움직임인데 關稅制度, 海外現地投資의 활

31) 中國對外貿易法 第7條(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이 무역분야에서 중국에 대해 편파적인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중국은 실제상황에 따라 해당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에 따라 미국의 貿易報復措置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게 되었으며, 금번 조치는 2. 26 중국 수출품목에 대해 미국측의 보복조치가 효력을 발생할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함.

성화, 知財權 관련 制度整備등도 중국의 종합적인 産業政策의 관련하에서 調整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外資誘致와 관련된 업종분류<sup>32)</sup> 및 공표도 같은 의도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對外制度改革과 産業政策과의 연계성을 약술하기로 한다.

### Ⅲ.4 對外制度改革과 産業政策과의 連繫性

중국은 94. 6 간략하기는 하지만 전체 4페이지의 90年代 産業政策要綱을 발표한 바 있다. 同 産業政策要綱은 앞으로의 각 부문의 産業政策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指針을 제공하는 성격의 것으로 農業, 社會間接資本, 基礎工業, 基幹産業 및 對外貿易 등 중점발전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産業政策 要綱”은 너무 간략하여 그 자체로는 구체적인 윤곽이나 내용을 알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제정될 각 분야별 産業政策 內容이 실제로 중요하다고 본다. 中國政府는 이미 후속 조치로 투자사업 표준규모 및 자동차산업 육성정책을 발표하였다.

#### Ⅲ.4.1 90年代 國家産業政策<sup>33)</sup> 要綱

##### ○90年代 産業政策 주요 目標

－농업 및 농촌경제의 발전과 농민수입의 향상

32) 外資誘致業種은 권장, 제한, 금지업종으로 분류한 것으로 상세한 내용은 김익겸 (1995) 참조바람.

33) 産業政策은 국가계획위가 관련부처의 정책을 종합하여 연구 제정하여 최종적으로 국무원에서 결정함. 산업정책 심의를 위해 국가계획위가 관련부처 및 산업계, 학자, 소비자와 協議 및 討論 진행함. 수립된 産業政策의 실시를 보장하기 위해 財政, 金融, 稅務, 工商管理 등 각 관련기관이 중요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국가계획위와 협의함. 國務院은 산업정책의 감독검사 및 평가를 행함.

-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기초공업의 육성
- 기계,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및 건축업 등 기간산업의 발전
- 대외무역의 확대

○ 각 産業部門別 産業政策

- 중국정부는 産業政策을 발전시키기 위해 각각의 산업분야에 대한 産業政策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미 발표한 자동차산업정책에 이어 앞으로 교통, 통신, 건축, 전자, 기계, 석유화학, 외자, 외국무역, 기술 등 각 분야의 産業政策을 제정할 것임.

○ 중국 産業政策의 골격<sup>34)</sup>

- 농업, 수리, 에너지, 교통, 통신, 과학기술, 교육, SOC 강화
- 중화학공업 육성
  - 기계 : 대형 PLANT 장비 개발과 제조 수준향상  
기초 기계와 기초부품의 성능과 품질개선
  - 전자 : 집적회로, 신형부품, 컴퓨터와 통신설비 발전  
정보산업발전(경제와 사회발전에 정보화 시스템과 장비를 제공)
  - 석유화학 : 합성섬유, 합성수지, 합성고무를 중점개발
  - 자동차공업 : · 부품, 소형승용차, 중장비 관련 특장차 발전  
· 자동차 기술개발 체계 건립
  - 건축업 : 도시 및 농촌주택과 공공 PROJECT를 건설  
신형 전자재 및 제품 개발
  - 경방직공업 : 국내외 시장 수급변화에 따라 구조조정과 합리화 가속화.  
기술진보촉진. 신제품의 개발
- 尖端技術産業 육성
  - 전자정보, 생물, 신소재, 신에너지, 우주항공, 해양 등 분야

---

34) 9차 5개년 개발계획관련 건의서에 재론됨.

### －기타 3차산업

- 관광, 정보, 자문, 법률, 회계서비스, 금융, 보험업, 부동산서비스업의 진흥

### Ⅲ.4.2 自動車産業 政策内容

自動車産業政策은 중국정부가 제시한 産業別 産業政策의 시발산업이다. 중국은 금세기 말까지 자동차 생산능력을 연간 280만~300만대 수준으로 늘리고 海外輸出能力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15년 장기계획을 수립, 금세기 말까지 승용차 130~150만대를 포함한 총생산능력 280~300만대 확충복안을 가지고 있다. 이를 근간으로 주요 업체 생산능력확장과 기술개선 영업강화를 권장할 예정으로 있다. 특히 오는 98년까지 2년간 전국 15개 주요 공장에서 승용차 부품의 60%를, 소형트럭부품의 80%를 각각 생산토록 하는 등 부품의 국산화 비율을 대폭 늘릴 것을 당면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궁극적 자동차산업 목표는 연간 생산능력을 6백만대로 하고 그중 승용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2/3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세한 自動車産業의 現狀況을 고려, 1996. 1. 1 이전에는 신규 자동차조립 공장을 불허하며 1996년 이후에는 그때의 시장수급 상황을 보아 결정할 것으로 있다. 1996년 이전에는 자동차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부품의 합작 생산공장을 육성할 계획이다. 중국의 자동차산업은 1990년대에는 계속 유치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며 따라서 제한된 기간동안 輸入許可制에 의한 보호를 할 것이다.

### Ⅲ.4.3 投資事業의 標準經濟 規模

중국정부가 投資事業 標準規模를 제정한 것은 그사이 많은 중국의 공장들이 영세한 규모와 낙후된 설비로 經濟性이 없는 가운데 운영되어 왔던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출발하고 있다. 앞으로는 投資規模의 大型化를 통하여 經濟效率

을 높이고 현대적인 生産經營體制를 확립해 나가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 가령 자동차산업같은 경우 현재 전국에 수백개 공장이 산재해 있는데 연 생산대수가 100만대 남짓하다. 따라서 한 공장이 불과 수백대를 생산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정부가 3大3小政策 등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산업의 경우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經濟規模에 미달하는 영세한 시설이 난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번 標準經濟規模 발표를 통해 大型化·合理化 해나가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 投資事業 標準經濟規模 制定의 目的

— 規模의 經濟(Economies of Scale)를 이룰 수 있는 투자를 함으로써 經濟效率을 높이고 國際競爭力을 향상하기 위함.

○ 標準經濟規模의 적용

— 90년대에 있어서 新規投資, 擴大投資, 技術開發事業의 합리적 건설규모를 정하는 내용으로 정부승인의 주요 기준이 되며 각급 政府機關이나 企業(외국투자기업 포함)은 이에 따라 집행해야 함.

— 標準經濟規模에 미달하는 건설사업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음.  
 교통이 불편한 지역이나 낙후된 지역 등 특수상황으로 인하여 표준규모 이하로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그 필요성 및 사유를 명시하여 主務部處를 경유 國家計劃委員會 및 國家經濟貿易委員會에 신청해야 함.

— 標準經濟規模에 부합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은행대출이나 외환공급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필요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발행도 허용함.

— 國家計劃委와 相關부문은 標準經濟規模를 국민경제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정 대상사업을 확대해 나감.

〈表 20〉

## 業種別 標準經濟 規模(1차 발표분)

○에틸렌	30만톤 이상
○정 유	500만톤
○염화비닐	20만톤
○폴리염화비닐	4만톤
○폴리프로필렌	7-10만톤
○에틸렌글리콜	10만톤
○소 다	20만톤
○가성소다	5만톤
○합성암모니아	8만톤
○전기동	5만톤
○전해알미늄	10만톤
○산화알미늄	50만톤
○폴리에스텔	6만톤
○나이론사	5000톤
○승 용 차	15만대
○소형화물차	10만대
○소형객차	5만대
○대형화물차	1만대
○자동차엔진(휘발유)	15만대
○디젤엔진	10만대
○오토바이	20만대
○VCR	60만대

## IV. 綜合評價 및 結論

이상 Ⅱ, Ⅲ章을 통해 중국의 國際化 現況 및 對外通商政策의 흐름을 알 수 있는 對內 및 對外制度 改革을 정리해 보았다. 중국의 經濟體制 改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과감하게 추진하는 면도 없지 않은 것 같다. 특히 일단 社會主義 計劃經濟 路線이 적잖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자 곧바로 市場 經濟體制로의 전환에 과감하게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本章에서는 중국의 通商政策의 특징, 그리고 우리의 對應 示唆點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 IV.1 中國通商政策의 특징

우선 우리에게 참고가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은 中國의 通商政策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정리해 보는 것이다. 중국이 改革·開放이후 취한 通商政策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通商政策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단초는 貿易額의 地域分布 및 外國人投資 誘致의 분포 등의 通商實績과 MFN 연장과 관련된 美·中協商 및 중국의 WTO가입에 투입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보인 중국측의 협상전략 등을 통해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필자가 평소에 느낀 중국측의 문제발생 시 해결태도를 綜合, 중국 通商政策의 특징으로 주관적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 IV.1.1 融通性

중국 通商政策의 특징중 첫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融通性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은 通商協商 상대에 따라 유효적절한 전략을 취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이 주로 취해온 戰略에 따르면 自國의 國力을 기준으로, 協商相對國에 비해

자국의 국력이 못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多者間 協商을 선호하고 국력이 낮다고 평가하는 경우 兩者間 協商에 의존해온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1986. 이후 끈질기게 추진하고 있는 WTO加入 協商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자 한 것은 最大交易相對인 미국과의 兩者協商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적잖게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은 自國 交易의 15% 상당을<sup>35)</sup>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순조롭게 끌고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미국은 Jackson-Vanik 법에 따라 MFN 연장과 관련, 중국의 인권사항을 연계시켜 체크하곤 하였다. 이는 특히 1989.6.4 사태 이후 상당수의 반체제인사가 표면에 등장하게 됨으로써 쟁점화되고 있다. 특히 人權과 貿易의 연계는 Clinton 정부 출범이후 두드러진 바 있어 미국이 중국에 대한 압력의 한 card로 사용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이 보다 실리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미국이 중국을 압박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인식을 Clinton 行政府 인사들이 가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MFN 자격 부여시, 무역과 인권을 분리시키는 단안을 내리게 되었다.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MFN 연장과 관련된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되도록이면 회피하고자 하는 입장이다. 이를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의 하나가 WTO에 가입함으로써 無差別原則에 따른 미국으로부터의 자동 MFN 대우 향유를 노리는 것이다. 과거 9년간의 WTO加入 協商에서 중국이 보인 태도는 철저히 미국과 EU, 일본 등의 입장 차이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었다. 상호견제시키면서 중국의 입장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즉 協商에 따라 융통성이 돋보이는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5) 94년 기준으로 對美輸出은 17.7%, 輸入은 12.1%의 비중을 지님.

#### IV.1.2 전격성 / 과감성

중국 通商政策에서 보인 또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전격성 내지는 과감성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중국 元화의 완전태환성 부여 문제가 쟁점으로 되고 있으나, 1993년에 가장 관심을 끈 것은 元화(단위 : RMB)와 외환 쿠폰(단위 : FEC)의 二重構造를 언제까지 유지시켜 끌고 갈 것인지 여부였다. 당시 公正換率과 암去來換率의 차이는 50% 이상이었다. 즉 1달러당 公正換率은 5.7 FEC 였는데 비해, 암거래환율은 달러당 8~11 RMB로서 큰 폭의 변동을 보이고 있었다. 어떤 매장에서 FEC와 RMB를 1:1로 혼용했으며, 암달러상에서 RMB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외국인 구매자들은 암달러를 선호하였다. 이에 따라 가격이 2중, 3중으로 존재하는 혼란상을 보이게 되고, 투자의 경우에도 중국 元화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 FEC 환율을 적용할 것인지가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일부에서는 암거래 가격이 달러당 15 RMB를 넘어설 것으로도 추정하기조차 하였던 것이다.

中國當國은 1993.12월말 전격적인 발표를 통해 FEC를 폐지하는 대신 對美貨換率을 1달러당 8.7 RMB로 一元化 시켰던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무척 충격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중국은 1달러당 8.7 RMB를 고수하면서, 각종 經濟政策을 수립하는 한편, FEC 유통을 상당기간 인정하는 과감성을 보였다. 즉 민간보유 FEC가 제도권으로 흡수될때까지 1달러당 5.7 FEC를 유지시키면서 FEC 자체가 자연소멸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FEC의 제도권내 자연흡수를 위한 소멸시기를 2년여 부여한 것으로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 IV.1.3 實利性

이 특징은 미국과의 協商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다. 改革·開放政策 채택 이후 兩者協商의 가장 중요한 상대자는 미국이었다. 최근 미국과의 經濟關係로

인한 協商은 대체로 3가지로 집약된다. 그 하나가 知財權 관련 協商이고, MFN延長 協商 및 WTO 가입 협상이 나머지 두가지 쟁점이다. 특히 知財權 및 MFN延長 協商時 자주 나타난 것이 막판까지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최대한 양보를 추구하는 協商戰略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은 하였다.

知財權의 경우 앞장에서 살펴본 바처럼 美·中 兩國間 協商은 거의 막바지까지 난항을 거듭하곤 하였다. 중국으로서는 미국에 대해 수세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순간까지 미국을 곤혹스럽게 하면서 미국으로 부터 실리적인 양보를 얻어내곤 하였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貿易黑字에 따른 외환 보유고의 여유분으로 대량 구매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미국으로 부터 굵직 굵직한 물품(가령 항공기 및 설비자재)을 구입하는 한편,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미국기업인으로 하여금 중국의 시장성을 議會關係者에게 설득시키는 작업을 병행시키곤 하였다. 즉 이러한 노력을 통해 協商의 최후 마감시간까지 가면서 중국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끈기와 실질성을 보였던 것이다.

#### IV.1.4 상호견제성

중국이 자주 사용하는 또 하나의 協商戰略은 상호 엇비슷한 국가를 견제시키는 것이었다. 주로 WTO加入 協商에서 사용해온 바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이 난관을 거듭하자,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EU 및 日本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자주 사용하곤 하였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와의 關係強化도 우리나라와의 관계강화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日本을 끌어들이거나 견제하기 위한 戰略이라는 일부 비평도 나온바 있다. 즉 중국이 필요로 하는 것은 주로 資本과 技術로서 당장 일본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으로서는 중국이 일본의 競爭相對國化 하는 것이 걸려있는 점이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기술이전에 있어 상당히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으며, 이러한 일본측의 태도가 자주 비난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반면에 중국은

우리나라와 수교한지 몇년 지나지 않았는데도 아주 빠르게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다. 당장 지난해 6월만 해도 1994.3 김영삼 대통령의 중국방문 후속조치로서, 항공기, 고화질TV, 자동차, 전전자교환기 등 주요산업에 대한 産業協力委員會를 출범시켰다. 즉, 韓·中 兩國이 상기 산업에서 개발단계뿐 아니라 생산, 판매 분야까지 긴밀히 협조토록 한 것이다.

실제로 항공기 분야의 경우, 1996년초까지 韓·中 항공기공동개발회사를 출범 시키고 1999년까지 시제품을 생산한뒤 2000년부터 본격 판매에 들어간다는 계획이 확정되었다. 이외에도 고화질TV분야에 대한 협력이 구체성을 더해가고 있으며 상기 4개 분야 이외에도 원자력, 화학공업분야까지 협력을 넓혀가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韓·中間의 協力에 대한 다짐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도 일부로 부터는 궁극적으로 일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중국의 의지가 작용한 것이지 우리나라와의 協力を 진정 원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도 얘기되곤 한다. 즉 목표하고자 하는 것은 일본이거나 미국 등인데도 한국이나 EU, 일본 등을 두드린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간의 조바심과 경쟁심을 자극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하고자 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상호견제성과 관련, EU국가 가운데서도 독일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 독일은 최근만 하더라도 95. 11. 13 헬무트 콜 독일총리가 우수기업 대표들을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하였다. 콜총리는 5일간의 일정중에 강택민 주석과 이붕 총리를 만나 兩國間 協力關係를 논의한 바 있는데, 특히 尖端技術委員會 設立을 포함하여 사회간접자본, 國際通商法, 科學研究 등 4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또한 독일은 민간분야에서 항공기술, 선박 건조, 자동차, 발전설비, 통신산업 등 12개 분야에서 14억 달러 상당을 수주한 것으로 발표되었다.<sup>36)</sup> 이외에도 독일의

36) 박성조 베를린대 교수는 콜총리가 UN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대신 중국방문을 하게 된 것이 독일의 21세기 通商政策의 중심이 지역적으로 21세기 經濟成長核心地域인 아시아지역, 특히 그중에서도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강화를 겨

지멘스가 향후 5년간 아시아·태평양지역 통신분야를 비롯한 수송, 발전소, 의료 장비 등 社會間接資本에 4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으로 있다는 점이 주목되고 있다.

## IV.2 向後 展望 및 對應

중국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8년 改革·開放政策을 채택한 이래 과거 18년간 나름대로 성공적인 國際化를 추진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과거 18년간의 國際化 노력은 9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경제여건이 輸出主導型 開發戰略이 먹혀 들어가기에 그래도 나은 조건이었다. 이 결과 빠른 수출증가를 기록하면서 國民經濟의 發展이 가능하였다. 制度의 改革도 결국은 WTO가입이라는 외부충격에 의해 내부의 經濟構造(産業構造 포함)를 성숙화시키고자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그러나 중국도 對外部門에만 의존하여 經濟發展을 지속시키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판단, 국내 토목부문을 활성화시킴으로써 第2의 經濟發展 엔진을 점화시키고 있다. 이는 삼협댐 건설사업으로 대표되는데, 양자강의 중류 협곡인 삼협에 추진되고 있는 세계최대의 댐건설이 그 예이다. 댐높이는 185m로 총 저수량은 소양강댐의 10배를 훨씬 넘는 3백 93억 $m^3$ 이고 26개의 발전기를 설치할 경우 발전시설용량은 1768만kw에 이를 것이다. 93년부터 3년간의 공사준비기간을 포함하여 주요 구조물을 짓는 1단계 사업에만 18년이 소요될 예정이다. 總投資費는 180억 달러이고 댐이 완성되고나면 600km 상류지역인 중경지역까지 저수지가 형성돼 1만톤급 선박이 운항할 수 있게 된다. 삼협댐건설은 ① 高度經濟成長에 따른 에너지 수요증가에 대비한 대책, ② 10년에 한번꼴로 발생하고 있는

---

양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음(매경 '95. 11. 21).

대홍수의 방지,<sup>37)</sup> ③ 해안/내륙의 경제격차해소를 겨냥한 교통망 확충 일환등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시작된 것이다.<sup>38)</sup>

이처럼 중국은 對內外 여건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해외부문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하지는 않고 있다. 중요한 증거의 하나가 종합상사의 설립움직임이다. 즉 중국은 國有企業體質改善 및 貿易增大의 일환으로 종합상사를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있다. 우선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으로서 최대의 貿易業體인 中化公司<sup>39)</sup>를 94년말 최초의 종합상사 시범기업으로 선정하였다.<sup>40)</sup> 同 中化公司가 95. 4월에 밝힌 종합상사 시행 10개년 추진계획에 따르면 중국이 지향하고 있는 종합상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

첫째, 中化公司는 동사를 주축으로 형성된 中化그룹의 핵심업체로서 中化그룹 산하 업체의 지분을 일부 또는 전체를 보유하는 이른바 지주회사의 성격을 갖게 된다.

둘째, 中化公司는 公司法에 따라 주식회사화 하되 정부가 100% 지분을 갖는다.

셋째, 동사는 우리나라의 대우 및 선경을 종합상사 발전의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제품개발·생산 및 조달·판매는 물론이고 무역 및 금융기능까지 포괄하는 기업그룹화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2개의 기업체가 종합상사 설립허가를 신청해<sup>41)</sup> 놓고 있다.

37) 1931. 1934년 홍수때는 각각 14만명의 인명피해 존재함.

38) 그러나 지난 95. 9. 14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수출입은행이 중국의 삼협댐 건설 사업에 참여하려는 美國企業에 대해 자금지원을 하지 않도록 했다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주목되고 있음. 國家安保委員會가 검토한 결과, 중국의 환경문제파괴때문에 미국정부가 중국의 삼협댐사업을 직접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어 그 추이가 주목되고 있음.

39) 부록 V.3 참조.

40) 동사의 정식이름은 “中國化工輸出入總公司”로서 중국최대무역회사인 바, 94년에 만도 수출입합계 71.2억 달러를 기록

이상을 종합해 본다면, 중국은 21세기 世界 經濟活動의 주역의 하나로 등장하기 위해 對內·外的으로 각종 制度改革을 추진해 오고 있다. 우리로서도 중국을 경쟁의 상대, 협력의 상대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여하히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시키는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종합상사 예처럼 우리나라의 제도가 中國 通商政策의 立案, 執行過程에서 먼저 참고가 되겠지만 우리도 참고할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차적으로 중국의 政策立案·執行의 행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동시에 향후 우리나라의 중요 經濟PARTNER로 등장할 것에 대비, 중국의 행보에 능동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종합 판단한다.

- 
- 41) 하나는 上海東方國際有限公司로 동사는 94년도 상해시 수출입 1위업체인 上海市 실크수출입공사와 2위업체인 상해시복장수출입공사 등을 포함한 5개사로 구성되어 있음. 동사는 현재 國務院에 종합상사 설립인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바, 94년도 기준 상기 구성업체 전체의 수출입액은 18.9억 달러임. 또 하나는 中國技術進出口總公司인데 동사는 94년도 수출입액 36.8억 달러로서 전국 3위 무역액을 기록하고 있으며 93년 하반기부터 종합상사로의 발전을 겨냥, 일본 및 한국의 종합상사의 경영관리를 시찰·연구중에 있음.

## V. 附 錄

### V.1 中國의 改革·開放 年表

1978. 12 중국 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전체회의(등소평氏의 지도권 확립 및 개혁·개방노선 확립)
1979. 1 중·미국교 회복
1980. 8 深圳, 珠海, 汕頭(광둥성) 등 3개 도시의 경제특구 설립
1980. 10 廈門(복건성)을 경제특구에 추가
1982. 9 당12회 대회를 통해 등소평氏가 “중국의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제기
1984. 4 해안 14개 도시 및 海南島를 대외개방키로 결정
1984. 12 중·영 97년 홍콩의 중국반환에 합의
1987. 1 胡耀邦 총서기 해임
1987. 10 당13회 대회를 통해 현재의 중국을 “사회주의 초급단계”로 규정
1987. 11 중국 공산당 제13기 1차 중앙전체회의를 통해 趙紫陽씨를 총서기에 선출
1988. 4 海南省 설립, 경제특구로 선포
1989. 5 고르바초프 소련공산당 서기장 방중, 북경 등지에서 민주화 요구 데모로 북경에 계엄령 포고
1989. 6 천안문 사건, 제13기 4차 중앙전체회의 趙紫陽 총서기 대신 江澤民씨를 임명
1989. 11 제13기 5차 중앙전체회의, 등소평氏 당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하고 대신 江澤民 총서기를 임명
1990. 1 북경의 계엄령 해제

1990. 4 上海市 浦東지구의 개발결정
1991. 3 제7대 국회(全人代) 제4차 전체회의에서 “국민경제, 사회발전 10개년 계획과 제8차 5개년 계획”을 결정하고 朱鎔基, 鄒家華를 부총리에 임명
1992. 1 등소평氏 深천 동남부지역을 순회하고 나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지시
1992. 3 제7대 국회(全人代) 제5차 전체회의를 통해 “개혁가속·개방확대”를 결정
1992. 10 당14회 대회 “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을 선언
1993. 3 제8대 국회(全人代) 제1차 전체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목표를 명시함
1993. 7 경제과열에 대한 책임에 따라 李貴鮮 中國人民銀行長을 해임하는 대신 朱鎔基 부총리가 인민 은행장을 겸임토록 하고 경제긴축정책을 채택
1993. 11 제14기 3차 중앙전체회의를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 강령을 채택함
1994. 1 중국화폐의 단일화
1994. 3 제8대 국회(全人代) 제2차 전체회의를 통해 안정과 발전의 양면을 강조한 정부활동 보고를 채택
1994. 7 중국정부 처음으로 개별산업 정책지침을 담은 “자동차공업 산업정책”을 발표함
1994. 12 양자강 3협범 건설 정식으로 착공
1995. 3 제8대 국회(全人代) 제3차 회의에서 인플레이에 대한 대책을 강조한 정부활동보고를 채택하는 한편 중앙은행법안 시행함
1995. 4 등소평氏의 최대 라이벌인 陳雲씨 사망  
4개 외국은행 북경지점 개설 허용

- 1995. 6 이등휘 대만 총통 미국방문(미·중관계 냉각)  
중국정부 “외자계 기업 산업투자지도 목록” 발표
- 1995. 7 상업은행법 시행, 中國人民銀行 行長에 戴相龍씨를 선임
- 1995. 9 · 제14기 5차 중앙전체회의를 통해 제9차 5개년 개발계획 및 2010  
년까지의 장기발전계획을 발표  
· 북경시의 부패사건으로 陳希同 북경에 당서기를 해임함

註) \* 당대회 및 정기국회(全人代) 비교 : 중국 공산당 당대회는 1921. 7 상  
해에서 개최된 제1기 대회를 비롯해 최근에는 대체로 5년 주기로 1기씩  
이 변하면서 현재 14기에 이르고 있음. 한편 정기국회는 1954년 제1대  
1차회의가 개최된 이래 대체로 매 5년마다 개최되고 현재는 제8대 정기  
국회시기에 해당되고 있음.

## V.2 中國 對外貿易法 소개

### 1. 中國 對外貿易法 主要 内容

#### 가. 概要

- 총 8장 44조의 조문으로 규정
- 총칙, 무역업자, 수출입 제한, 서비스 교역, 공정교역, 무역진흥, 벌칙, 부  
칙 등 내용을 규정

#### 나. 貿易業者 資格

- 수출입업을 하기 위하여는 국무원 대외무역 주관 부문의 허가를 얻어야  
함.
- 외국투자기업은 이 법에 의한 허가없이도 외국인 투자관계 법률의 규정

에 따라 수출입업을 할 수 있음.

#### 다. 수출입방법 및 제한

○ 수출입은 원칙상 자유로우나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음.

- 국가안정이나 사회공공이익을 위한 수출입 제한
- 국내 공급부족 자원의 수출제한
- 상대방 국가의 쿼타에 의한 수출제한
- 국내 특정산업 육성을 위한 수입제한
- 농업, 목축업, 어업보호를 위한 수입제한
- 국제수지 균형을 위한 수입제한
- 국제조약에 근거한 수출입 제한

○ 상기 제한품목은 국무원 대외무역 담당기관이 결정 공고함.

#### 라. 서비스交易

○ 서비스교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제조약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교역 의무를 준수함.

#### 마. 對外貿易秩序

- 공정한 무역질서를 유지하며, 위조상품 수출입을 방지하고 원산지 증명을 정확히 하며, 지적재산권을 존중함.
- 덤핑이나 수입의 급격한 증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바. 무역진흥

○ 국가는 대외무역을 진흥하기 위하여 수출입 자금융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

#### 사. 별 칙

- 금지품목의 수출입, 위조상품교역, 원산지증명 위조 등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규정

#### 아. 부 칙

- 1994. 7. 1부터 시행

### 2. 意義

中國政府가 對外貿易法을 제정한 것은 우선 對內的으로 改革·開放의 확대와 市場經濟의 건설에 맞추어 무역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對外的으로 가장 큰 과제인 WTO가입을 위한 전제조건 충족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對外貿易法의 내용은 商品 輸出入은 물론, 서비스交易, 知的財産權, 原產地 증명, 위조상품 방지, 덤핑방지 및 긴급수입제한 등 최근 세계적으로 새로이 발전되고 있는 무역형태나 관련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념상으로는 상당히 진보적인 대외무역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입제한 문제에 있어서 국내 산업육성, 농림어업보호, 국제수지균형을 위한 보호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제한 등 광범위한 수입제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의 제정으로 실질적인 무역활동의 제약이 곧바로 축소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법의 규정에 따르면 대외무역 주관부처가 상기 조항을 근거로 제한할 품목을 결정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제로 중요한 것은 이 공고 내용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정부가 이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라 법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V. 3 中國 25大 輸出入業體(1994年)

단위 : 백만\$

順位	企業名	輸出入總額	輸出	輸入
1	中國化工進出口總公司	7,124	3,456	3,668
2	中國糧油食品進出口總公司	3,705	1,903	1,802
3	中國技術進出口總公司	3,676	234	3,442
4	中國五金鑛產進出口總公司	2,859	564	2,295
5	中國紡織品進出口總公司	2,735	1,680	1,055
6	中國航空器材公司	2,411	3	2,408
7	中國電子進出口總公司	2,202	1,289	912
8	中國機械進出口總公司	2,000	271	1,728
9	中國北方工業公司	1,983	1,357	626
10	中國石化國際事業公司	1,944	648	1,295
11	中國工藝品進出口總公司	1,547	1,251	296
12	中國鋼鐵工貿集團公司	1,514	724	789
13	中國煙草進出口總公司	1,255	596	659
14	中國航空技術進出口總公司	1,197	783	413
15	中國絲綢進出口總公司	1,183	1,142	40
16	上海市對外貿易公司	1,108	103	1,004
17	中國包裝進出口總公司	1,097	600	497
18	中國遠洋運輸(集團)總公司	1,080	189	890
19	中國土產畜產進出口總公司	1,077	914	162
20	中國有色金屬進出口總公司	1,060	705	355
21	廣東省輕工業品進出口(集團)公司	1,033	868	165
22	中國出口商品基地建設總公司	1,027	721	306
23	中國儀器進出口總公司	979	118	861
24	中化遼鈴進出口公司	969	954	15
25	中國聯合石油公司	961	814	146

資料：中國經濟新聞 1995. 5. 8, 北京經濟日報社

## V. 4 外資系企業買上高 上位30社

91年 順位	92年 順位	93年 順位	94年 順位	企 業 名	投資國	業 種	賣上高 (億元)	利潤額 (億元)	總資產額 (億元)	輸出額 (萬\$)
1	1	1	1	上海大眾汽車	獨逸	自動車	105.3	9.2	47.5	141
2	2	2	4	北京吉普汽車	美國	自動車	32.8	0.1	21.9	1,456
17	6	3	2	上海貝爾電話設備製造	벨기에	通信機	28.3	11.0	34.7	1,630
3	3	4	71	廣州標致汽車	프랑스	自動車	25.4	1.9	27.7	1,688
22	13	5	5	重慶慶鈴汽車	日本	自動車	22.9	4.7	46.0	1,500
6	9	6	7	深セン康佳電子(集團)	香港	電機·電子	22.0	2.4	11.2	9,274
4	4	7	3	海南油脂工業(赤灣)	말레이시아	食品	20.0	0.8	8.0	10,800
-	-	8	16	福建永恩集團	不明	不明	18.7	0.6	5.5	36,501
8	5	9	15	華強三洋電子	日本	電機·電子	18.7	0.4	5.9	15,826
-	-	10	-	順德華寶電業	香港	電機·電子	17.8	0.4	18.3	480
9	10	11	26	深セン中華自行車(集團)	香港	自動車	17.6	2.2	22.9	18,759
-	16	12	62	一汽大眾汽車	獨逸	自動車	16.6	-	38.5	-
-	-	13	10	上海鳳凰自行車	不明	自動車	15.5	1.7	16.4	3,251
16	12	14	32	北京輕型汽車	香港	自動車	15.1	1.0	11.7	3,251
5	11	15	9	北京松下彩色顯像管	日本	電機·電子 (컬러TV·브라운관)	15.0	2.2	13.8	4,753
11	20	16	31	福建日立電視機	日本	電機·電子 (텔레비전)	14.4	0.3	3.6	4,038
19	15	17	23	廣東健力寶集團	마카오	食品	14.0	0.8	10.5	7
-	-	18	21	上海lujian化工	美國	化學	14.0	1.9	42.7	2,743
20	7	19	42	瀋陽金杯客車製造	香港	自動車	13.8	-	14.0	-
54	24	20	30	江蘇春蘭制冷設備	不明	電機·電子	13.5	1.4	3.9	86
64	44	21	12	上海三菱電梯	日本	電機·電子 (엘리베이터)	13.3	1.4	10.1	557
13	17	22	19	上海易初摩托車	泰國	오토바이	13.0	1.6	6.3	107
-	84	23	38	五洋·本田摩托車(廣州)	日本	오토바이	12.9	1.3	0.3	-
18	22	24	13	上海大江(集團)股本	泰國	飼料	12.0	1.6	14.4	3,823
21	21	25	47	華飛彩色顯示系統	화란	電機·電子	11.5	1.1	13.1	531
-	-	26	29	北京國際交換系統	獨逸	通信機	11.0	1.7	12.0	-
40	32	27	33	中國天津奧的斯電梯	美國	電機·電子 (엘리베이터)	10.8	1.0	3.5	397
32	30	28	43	中國迅達電梯	스위스	電機·電子 (엘리베이터)	10.7	0.8	1.2	2,094
-	42	29	37	深セン賽格日立彩色顯示器件	日本	電機·電子	10.7	0.2	12.4	2,530
14	41	30	-	上海永新彩色顯像管	香港	電機·電子 (컬러TV·브라운관)	10.6	0.7	12.1	-

註：1. 「1993年度 中國最大の 500大 外商投資工業企業順位」『國際商報』1994년 10월 28일에 의해 作成. 1991, 92年の 順位는 『國際商報』1992년 10월 24일에 의해 作成.

2. 94년 順位는 JETRO에 의거 作成.

## V. 5 輸出上位20大外資系企業(1994年)

(中國對外貿易經濟合作部外資司, 國家統計局貿經司, 世界經濟年鑑編輯委員會, 國際商報, 中華工商時報, 中國信息報, 發表)

順位	企 業 名	販 賣 額 (萬元)	利 潤 額 (萬元)	總資產額 (萬元)	輸 出 額 (萬\$)
1	深圳聯想電腦有限公司	236,167	1,300	30,788	30,277
2	南海油脂工業(赤灣)有限公司	432,000	23,803	105,000	22,688
3	三洋電機(蛇口)有限公司	165,789	3,246	85,507	19,650
4	平朔安太堡露点煤礦	119,610	25,096	280,971	19,537
5	深圳中華自轉車(集團)股份有限公司	161,047	14,835	293,994	18,990
6	福建永恩投資(集團)有限公司	191,002	7,452	18,860	17,302
7	佳能大連弁公設備有限公司	148,638	5,921	224,735	17,257
8	東莞福安紡織印染有限公司	158,004	4,953	142,315	16,090
9	中國國際海運集裝箱股份有限公司	134,196	11,383	124,152	15,568
10	冠捷電子(福建)有限公司	161,697	541	76,051	15,088
11	華強三洋電子有限公司	191,692	3,504	64,342	14,928
12	福建大豐投資集團有限公司	136,747	9,811	132,407	14,580
13	福建清祿集團有限公司	115,014	2,067	-	13,373
14	信華精機有限公司	108,182	1,453	43,071	12,500
15	威望(珠海)磁訊有限公司	106,753	1,548	58,448	12,413
16	摩托羅拉(中國)電子有限公司	257,055	-	-	11,682
17	萬寶至馬達大連有限公司	102,528	8,573	115,708	11,586
18	上海太平國際貨櫃有限公司	98,320	10,217	54,429	11,413
19	哈爾雙太電子實業有限公司	96,300	4,102	68,735	11,198
20	青島三美電機有限公司	85,278	2,641	63,706	9,688

## V. 6 經濟立法年表

〈1987年〉

法 律 名	公布日字
稅關法	1. 22
計量法實施細則	2. 1
統計法實施細則	2. 15
企業債券管理暫定條例	3. 27
耕地占有使用稅暫定條例	4. 1
水路運送管理條例	5. 12
動物用藥品管理條例	5. 21
技術契約法	6. 23
建築稅條例	6. 25
全人民所有制工業交通企業設備管理條例	7. 28
國營企業勞動爭議處理暫定規定	7. 31
都市農村個人經營工商業者管理暫定條例	8. 5
航路管理條例	8. 22
對外債務統計監視暫定規定	8. 27
大氣污染防治法	9. 5
價格管理條例	9. 11
輸出入關稅條例	9. 12
電力設施保護條例	9. 15
投機空取引行政處罰條例	9. 17
道路管理條例	10. 13
漁業法實施細則	10. 14
野生藥材資源保護管理條例	10. 30
麻醉藥品管理弁法	11. 28
廣告管理條例	12. 1

## 〈1988年〉

法 律 名	公布日字
商標法實施細則	1. 13
水法	1. 21
全人民所有制工業企業請負經營責任制暫定條例	2. 27
全人民所有制工業企業法	4. 13
中外合作經營企業法	4. 13
海南省設立에 관한 全人代의 決定	4. 13
企業法人登記管理條例	6. 3
全人民所有制小型工業企業貸經營暫定條例	6. 5
河道管理條例	6. 10
私營企業暫定條例	6. 25
私營企業所得稅暫定條例	6. 25
印紙稅暫定條例	8. 6
現金管理暫定條例	9. 6
都市土地使用稅暫定條例	9. 27
野生動物保護法	11. 8
土地管理法의 改正에 관한 決定	12. 29
標準化法	12. 29

## 〈1989年〉

法 律 名	公布日字
國家豫算調節基金徵收弁法	2. 17
輸出入商品檢查法	2. 21
國境衛生檢疫法實施細則	3. 6
石油・天然가스 PIPELINE 保護條例	3. 12
種苗管理條例	3. 13
價格關係違法事件의 審理에 관한 規定	3. 14
技術契約法實施條例	3. 15
鐵道運輸安全保護條例	8. 15
森林病蟲害防除條例	12. 18
環境保護法	12. 26
都市計劃法	12. 26

## 〈1990年〉

法 律 名	公布日字
「中華人民共和國中外合資經營企業法」改正에 關한 全人代의 決定	4. 4
標準化法實施條例	4. 6
都市部國有地土地使用權拂下·讓渡暫定條例	5. 19
鄉村集團所有制企業條例	6. 3
陸上起源의 汚染物이 海洋環境을 汚染시켜 損害를 가져오는 것을 防止하기위한 條例	6. 22
著作權法	9. 7
鐵道法	9. 7
外資企業法實施細則	12. 12

## 〈1991年〉

法 律 名	公布日字
企業職員·勞動者死傷事故의 報告와 處理에 關한 規定	3. 1
特許代理條例	3. 4
外國投資家投資企業 및 外國企業所得稅法	4. 9
固定資產投資方向調節稅暫定條例	4. 16
計劃出產活動의 強化와 人口增加의 嚴格한 抑制에 關한 中共中央과 國務院의 決定	5. 12
著作權法實施條例	5. 30
컴퓨터 SOFTWARE 保護條例	6. 4
技術契約仲裁機關仲裁規則(試行)	6. 25
煙草專賣法	6. 29
水土保持法	6. 29
外國投資家投資企業 및 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	6. 30
企業名稱登記管理規定	7. 24
城鎮集團所有制企業條例	9. 9
國家豫算管理條例	10. 21
輸出入動植物檢疫法	10. 30
國有資產評價管理弁法	11. 6

〈1992年〉

法 律 名	公布日字
勞動組合法	4. 3
國有資產財產權登記管理試行弁法	5. 11
株式制企業實驗弁法	5. 15
有限責任會社規範意見	5. 15
株式有限會社規範意見	5. 15
株式制實驗企業會計制度	5. 23
株式制實驗企業勞動賃金管理暫定規定	6. 1
株式制實驗企業의 財務管理에 관한 若干의 問題에 대한 暫定規定	6. 6
株式制實驗企業의 稅務關連問題에 대한 暫定規定	6. 12
株式制實驗企業巨視管理暫定規定	6. 15
株式制實驗企業會計審查暫定規定	6. 29
株式制實驗企業土地資產管理暫定規定	7. 9
全人民所有制工業企業經營에 카니 증轉換條例	7. 23
株式制實驗企業國有資產管理暫定規定	7. 27
租稅徵收管理法	9. 4
登錄會計士의 株式制實驗企業關連業務執行에 대한 暫定規定	9. 17
株式制實驗企業人事管理暫定弁法	9. 17
鑛山安全法	11. 7
海商法	11. 7
國家高新技術產業開發區에서 高新技術株式有限會社를 設立하는 경우에 부딪히는 若干의 問題에 관한 暫定規定	11. 19
測量製圖法	12. 28

〈1993年〉

法 律 名	公布日字
國家通貨出入國管理弁法	1. 20
生産物品質法	2. 22
商標法 (改正)	2. 22
憲法修正案	3. 29
國有企業職員・勞動者失業保險規定	4. 12
國有企業余剩職員・勞動者生活安定規定	4. 20
株券發行・去來管理暫定條例	4. 22
發明獎勵條例 (改正)	6. 28
科學技術進步獎勵條例 (改正)	6. 28
農業法	7. 2
農業技術普及法	7. 2
科學技術進步法	7. 2
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	7. 6
證券去來所管理暫定弁法	7. 7
企業債券管理條例	8. 2
國家公務員暫定條例	8. 14
經濟契約法 (改正)	9. 2
不公正競爭防止法	9. 2
會計士登錄法	10. 31
消費者權利・利益保護法	10. 31
個人所得稅法 (改正)	10. 31
付加價值稅暫定條例	12. 13
消費稅暫定條例	12. 13
營業稅暫定條例	12. 13
企業所得稅暫定條例	12. 13
土地付加價值稅暫定條例	12. 13
會社法	12. 29

〈1994年〉

法 律 名	公布日字
外資金融機關管理條例	1. 7
個人所得稅實施條例	1. 28
企業所得稅暫定條例實施細則	2. 4
台灣同胞投資保護法	3. 5
豫算法	3. 22
種畜禽管理條例	4. 15
對外貿易法	5. 12
國家賠償法	5. 12
會社登記管理條例	6. 3
勞動法	7. 5
著作權侵害犯의 處罰에 關한 決定	7. 5
都市不動產管理法	7. 5
國有企業財產監督管理條例	7. 24
基本農地保護條例	8. 18
音響映像製品管理條例	8. 25
仲裁法	8. 31
會計審查法	8. 31
自然保護區條例	10. 9
廣告法	10. 27

## 參考資料

- 김남두(1990), 「美國 通商政策의 中長期 方向」, KIEP 정책연구 90-08,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김시중(1993),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KIEP 정책연구 93-2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익겸(1995), 「中國의 外國企業 投資方向 指導에 관한 暫定規程과 外國企業 投資産業 指導目錄」, 지역경제 pp. 80-92, 1995년 8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익수(1995), 「中國의 WTO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經協에 미치는 影響」, KIEP 정책연구 95-1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백권호(1992), 「投資事例로 본 對중국 投資戰略」, KIEP 연구보고 92-02,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 吳振坤(1993), 中國對外開放通論, 北京工業大學 出版社.
- 經濟日報社(1995), 中國開放年鑑.
- 肖灼基(1992), 中國經濟概論, 經濟日報出版社.
- The World Bank(1994), China : Foreign Trade Reform, A World Bank Country Study.

## KIEP 發刊資料 案内

### ■ 政策研究

- |       |  |     |
|-------|--|-----|
| 90-01 | GATT 11條國 移行에 따른 政策課題와 對應方案 ('90.03)     | 金學洙 |
| 90-02 | EC 經濟統合과 對外貿易政策의 變化 ('90.03)             | 閔充基 |
| 90-03 | 換率制度와 外換危險管理 ('90.05)                    | 金宗萬 |
| 90-04 | 우루과이라운드 知的所有權 協商課題와 우리의 對應方案('90.05)     | 孫讚鉉 |
| 90-05 | 韓國經濟의 自由化 現況과 OECD 加入戰略 ('90.06)         | 金泰俊 |
| 90-06 | ASEAN 主要國의 貿易·產業政策과 投資環境變化 ('90.09)      | 柳在元 |
| 90-07 | 우리나라의 對開途國 中長期 經濟協力 方案 ('90.10)          | 金學洙 |
| 90-08 | 美國通商政策의 中長期方向 ('90.10)                   | 金南斗 |
| 90-09 | 多者間서비스 協商과 우리나라 建設產業의 國際化 ('90.10)       | 張義泰 |
| 90-10 | 日本企業의 海外直接投資와 國際化戰略 ('90.12)             | 徐相祿 |
| 91-01 | 美日經濟摩擦과 우리의 政策課題 ('91.01)                | 姜興求 |
| 91-02 | 主要換率變動의 特性和 政策示唆點 ('91.03)               | 金宗萬 |
| 91-03 | EC 貿易構造의 變化 ('91.04)                     | 金廷洙 |
| 91-04 | 美國金融市場의 構造와 規制制度 ('91.03)                | 李長榮 |
| 91-05 | 中國 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91.04)         | 吳勇錫 |
| 91-06 | 蘇聯의 對外貿易 및 金融制度의 改革 ('91.04)             | 朴濟勳 |
| 91-07 | 中國의 外國人 直接投資 誘致와 韓國의 進出展望 ('91.04)       | 金時中 |
| 91-08 | 우리나라 서비스交易의 構造와 推移 ('91.04)              | 李相學 |
| 91-09 | 韓國·臺灣·日本의 換率變動과 輸出競爭 關係分析 ('91.05)       | 曹琮和 |
| 91-10 | EC의 直接投資 環境變化와 對應方案 ('91.05)             | 閔充基 |
| 91-11 | 韓國의 對外經濟協力에 관한 政策課題와 方向 ('91.07)         | 金學洙 |
| 91-12 | 우리나라 세이프가드制度의 改善과 活用方案 ('91.08)          | 蔡 旭 |
| 91-13 | 우리나라 서비스產業의 生産性變化와 生産性的 國際比較('91.08)     | 俞鎮守 |
| 91-14 | 舊東獨의 價格體系와 市場經濟體制로의 轉換 ('91.08)          | 裴眞永 |
| 91-15 | 우루과이라운드 金融서비스協商과 證券產業의 競爭力 제고방안 ('91.08) | 金泰俊 |
| 91-16 | 폴란드 企業制度 改革과 直接投資與件 ('91.09)             | 洪裕洙 |
| 91-17 | 韓·美間 直接投資의 구조와 投資環境의 變化 ('91.09)         | 金南斗 |
| 91-18 | 한국·臺灣·日本의 產業政策과 產業構造調整 ('91.09)          | 柳在元 |
| 91-19 | 우리나라 株式市場 開放의 效果分析 ('91.10)              | 金宗萬 |

91-20	東北亞 經濟協力の 與件과 展望 ('91.12)	共 同
92-01	東北亞 地域 貿易構造와 域內 輸出競爭力 比較 ('92.01)	鄭永祿
92-02	貿易관련 政策 및 制度의 現狀과 改善方向 ('92.02)	共 同
92-03	統獨 1年의 경제적 評價와 展望 ('92.03)	裴眞永
92-0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1] 日本의 貿易障壁 ('92.03)	俞鎮守
92-05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1] 保險産業의 國際化戰略 ('92.03)	蔡 旭
92-06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2] 原產地規程 ('92.03)	韓弘烈
92-0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3] 日本의 輸入品流通过 流通障壁 ('92.03)	趙炳澤 李永俊
92-08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2] 會計서비스産業 國際化 推進方案 ('92.04)	金宗萬
92-09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3] 우리나라 海運産業의 國際化 戰略 ('92.06)	張義泰
92-10	러시아에서의 사유화 進展과 外國人 投資 與件 ('92.06)	朴濟勳
92-11	先進國의 對中 經濟交流 分析 ('92.06)	鄭永祿
92-12	中國의 企業集團 育成現況과 展望 ('92.06)	金益洙
92-1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4] 標準 및 檢査制度 ('92.07)	成克濟
92-14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5] EC의 貿易障壁 ('92.07)	閔充基
92-15	汎유럽經濟圈 形成의 展望과 影響 ('92.07)	金博洙
92-16	OECD 經常貿易外去來 및 資本移動 自由化規約과 韓國의 自由化 現況 ('92.07)	金泰俊
92-17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6] 金融서비스 關聯 障壁 ('92.07)	李長榮
92-18	유럽金融統合과 EC金融市場 進出方案 ('92.07)	李在雄
92-19	東歐 經濟改革의 類型과 成果 ('92.07)	洪裕洙
92-20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4] 流通産業의 開放效果와 對應戰略 ('92.07)	申世敦
92-21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5] 廣告産業의 國際競爭力 提高方案 ('92.07)	李相學
92-22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7] 政府調達 關聯 障壁 ('92.08)	崔仁範

92-23	先進國의 交易障壁 研究 ⑧ 美國의 貿易障壁 ('92.08)	金南斗
92-24	輸入先多邊化制度의 經濟的 效果 ('92.09)	共 同
92-25	東北亞經濟協力圈 形成을 위한 線形自由貿易地帶 構想과 그 期待效果 ('92.09)	孫炳海
92-26	UR 총점검 ('92.10)	共 同
92-27	換率, 金利 및 貨金變動이 우리나라 輸出에 미치는 영향 ('92.10)	金宗萬
92-28	國內先物去來所 設立·運營에 관한 研究('92.10)	共 同
92-29	日本의 産業 및 貿易構造의 變化와 展望 ('92.10)	金昌男
92-30	Korea's Recent Foreign Exchange Rate Systems: ('92.12)	김진천
93-01	GATT 및 主要先進國의 反덤핑制度和 우리나라 制度의 改善方案 ('93.01)	蔡 旭
93-02	우리나라 市場開放政策의 特徵과 效果 ('93.01)	韓弘烈
93-03	中國 國營企業 改革의 展開와 展望 ('93.02)	金時中
93-04	日本의 技術貿易 ('93.02)	俞鎮守
93-05	豆滿江地域 開發構想에 대한 論議와 展望	金學洙
93-06	블럭化時代의 亞·太經濟協力	共 同
93-07	中國의 技術導入 政策과 中日技術協力	吳勇錫
93-08	러시아의 軍需産業 民需轉換에 관한 研究 ('93.03)	朴濟勳
93-09	日本市場에서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3)	康仁洙
93-10	日本 換率政策의 方向과 우리나라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3)	金宗萬
93-11	日本 自動車産業의 競爭力 強化와 下請分業生産의 役割('93.04)	任千錫
93-12	先物去來 上場品目 選定에 관한 研究 ('93.04)	曹正錄
93-13	우리의 對舊蘇聯 經濟協力 基本戰略 ('93.04)	李昌在
93-14	外換市場介入政策의 效果分析과 換率政策에 대한 政策示唆點 ('93.05)	金泰俊
93-15	中國의 工業發展戰略과 産業政策 ('93.05)	金益洙
93-16	中國 輸入構造變化와 우리의 對應方向 ('93.05)	鄭永祿
93-17	EC 經濟統合과 우리나라의 輸出構造 變化 ('93.05)	閔充基
93-18	韓美間 産業構造의 特性이 輸出入에 미치는 影響 ('93.08)	成克濟
93-19	NAFTA의 出帆과 美國 輸入市場에서의 韓國과 멕시코의 競爭力 比較 ('93.08)	金尙謙
93-20	EC市場에서의 韓國의 競爭力 分析 ('93.08)	金博洙

93-21	韓·中 環境協力에 관한 研究('93.09)	共 同
93-22	知的財産權 國際化의 方向과 課題('93.11)	王允鍾
93-23	日本の 對아시아 技術移轉 戰略과 韓國의 對應 ('93.11)	洪裕洙
93-24	러시아 極東地域의 經濟와 우리의 經濟協力方案('93.11)	李昌在
93-25	UR 총점검(增補版) ('93.12)	共 同
93-26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戰略研究 [6] 엔지니어링서비스 産業의 現況과 國際化 方向 ('93.12)	孫讚鉉
93-27	南·北韓의 統一에 비추어 본 獨逸 信託管理公社의 役割과 意義 ('93.12)	朴成勳
93-28	臺灣企業 中國投資의 現況과 波及效果 ('93.12)	金時中
93-29	CIS 域內 交易 및 金融關係 分析 ('93.12)	朴濟勳
93-30	日本企業의 對中直接投資의 動向과 戰略 ('93.12)	金益洙
93-31	最近 우리나라의 日本技術 導入現況과 政策方向 ('93.12)	任千錫
93-32	環境關聯 經濟의 手段의 運用 現況 및 展望 ('93.12)	李鎬生
93-33	亞·太經濟協力の 새 方向 ('93.12)	共 同
93-34	交易條件變化와 資本自由化의 效果分析 ('93.12)	表鶴吉, 權皓寧
93-35	21世紀를 향한 韓·日間 技術分業과 技術協力の 基本方向 ('93.12)	朴宇熙 森谷正規
93-36	中國의 對外貿易과 韓·中 輸出競爭 ('93.12)	吳勇錫
93-37	資本自由化와 換率政策方向 ('93.12)	孫正植, 朴大槿
93-38	東歐改革의 進展과 經濟協力 擴大戰略 ('93.12)	鄭甲泳
93-39	資本自由化에 관한 事例分析: 開途國과 先進國의 경험('93.12)	金仁竣
93-40	亞·太經濟協力の 深化方案 ('93.12)	共 同
93-41	東歐 主要國의 民營化 研究 ('93.12)	尹健秀
93-42	우리나라의 對東歐 交易現況과 展望 ('93.12)	權寧堉
94-01	戰略的 提携와 技術革新의 國際化 ('94.01)	洪裕洙
94-02	NAFTA 原產地規程의 意義와 政策示唆點 ('94.01)	韓弘烈
94-03	統一이 東西獨의 産業立地와 産業構造에 미친 影響 ('94.02)	裴眞永
94-04	議題 21과 우리나라의 持續可能開發 戰略 ('94.02)	韓宅煥
94-05	WTO出帆과 新交易秩序-분야별 內容과 示唆點 ('94.07)	共 同
94-06	韓美間 科學技術協力 強化方案 研究 ('94.11)	洪裕洙
94-07	外國人 直接投資의 技術移轉效果에 관한 研究 ('94.11)	王允鍾
94-08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rogress in Conceptualization and in Praticice ('94.12)	共 同
94-09	21世紀 東北亞經濟協力を 위한 推進戰略 ('94.12)	李昌在

94-10	韓中經濟協力과 在中國同胞의 役割 ('94.12)	金時中
94-11	ASEAN 主要國의 外國人直接投資誘致와 그 示唆點 ('94.12)	魯在峯
94-12	韓美間 中長期 産業技術協力方案 ('94.12)	洪裕洙
94-13	知的財産權과 競爭政策의 國際的 調和 ('94.12)	丁相朝
94-14	外換 自由化와 換危險管理 ('94.12)	朱尙榮
94-15	統一以後 東獨經濟의 産業構造變化 研究 ('94.12)	金龍龜·朴成勳
94-16	戰略的 貿易政策으로서의 R&D 補助金 政策의 方向 ('94.12)	李正淵
95-01	日本企業의 對中進出：主要業種의 成果分析和 向後展望('95.05)	申晚秀 李掌魯
95-02	國際金融市場의 統合과 資本費用('95.05)	權才重
95-03	중국 內需市場의 構造的 特性和 進入 流通障壁： 消費財 工山品 市場을 中心으로('95.05)	金益洙
95-04	亞·太 經濟協力的 新構想 ('95.06)	李載星
95-05	貿易—環境 關聯課題와 우리나라의 立場 ('95. 10)	韓宅煥
95-06	우리나라의 公的開發援助 ('95.10)	李昌在
95-07	日本 對美直接投資의 開發 및 評價 ('95. 12)	金寬濬
95-08	OECD 投資規範과 韓國의 外國人直接投資制度 ('95.12)	王允鐘
95-09	貿易과 環境의 連繫 ('95.12)	李鎬生
95-10	중국의 WTO 가입이 中國經濟와 韓·中 經協에 미치는 영향 ( '95.12)	金益洙
95-11	海外 委託加工輸入에 대한 關稅減免制度의 效果 分析 ( '95.12)	金準東·康仁洙

## ■ 政策資料

90-01	蘇聯·中國 및 東歐의 變化和 對應 ('90.01)	共 同
90-02	1990年代 國際經濟 環境 變化和 對應戰略 ('90.06)	共 同
90-03	우루과이라운드 서비스協商의 進展狀況과 우리의 對應方案('90.08)	朴泰鎬
90-04	中國의 經濟改革에 있어서 分權化 및 市場經濟化의 展開 ('90.10)	蘇侑燮
90-05	美國·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0.11)	李長榮
91-01	北韓의 에너지 需要와 供給 ('91.03)	張榮植
91-02	北韓의 貿易 및 對外經濟 ('91.03)	姜正模
91-03	蘇聯 經濟改革政策과 우리의 對應 ('91.05)	李善煥, 方燦榮
91-04	臺灣·日本의 金融自由化와 政策示唆點 ('91.09)	李長榮
91-05	外國人 直接投資의 生産性 效果分析 ('91.10)	崔仁範, 玄定澤

91-06	韓國의 對베트남 經濟協力 基本戰略 ('91.11)	金學洙
91-07	蘇聯建設市場과 韓國建設業體의 進出 可能性 分析 ('91.12)	朴康植
91-08	技術障壁에 대한 國際的 論議와 對應方案 ('92.12)	孫讚鉉
92-01	中國工業經濟效率과 工業體制改革에 관한 研究 ('92.01)	共同
92-02	獨立國家聯合의 出帆과 韓·蘇 經濟協力 ('92.01)	朴濟勳
92-03	外國人直接投資의 不振要因과 活性化方案 ('92.03)	金南斗, 柳在元
92-04	EAA 創設의 問題點과 域外國들에 대한 影響 ('92.04)	閔充基
92-05	아시아 主要 開發途上國의 非關稅障壁 ('92.07)	魯在峯
92-06	EC 海運產業의 變化와 示唆點 ('92.08)	閔充基
92-07	海外直接投資의 現況과 政策課題 ('92.09)	共同
92-08	클린턴 次期 美國大統領의 經濟政策 ('92.11)	共同
92-09	對內外與件 變化와 韓中經濟協力의 新構圖 ('92.12)	金益洙
92-10	1993年度 國際經濟環境變化展望과 對應戰略 ('92.12)	共同
93-01	南北韓 物資交流와 原產地規程 ('93.05)	韓弘烈
93-02	GATT 最惠國待遇 原則과 南北韓 物資交流 ('93.07)	韓弘烈
93-03	韓國의 無償援助와 有償援助의 連繫方案 ('93.07)	金學洙
93-04	EC 競爭政策 變化와  우리의 對應方案 ('93.08)	閔充基
93-05	최근 世界經濟의 沈滯와  우리經濟에의 示唆點 ('93.09)	共同
93-06	西方의 對러시아 經協전략과 示唆點 ('93.10)	朴濟勳
93-07	主要國의 先物市場 規制定策 ('93.10)	曹正錄
93-08	國際貿易紛爭의 現況과 GATT의 役割 ('93. 11)	蔡 旭
93-09	主要國의 輸出支援制度 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3.12)	金準東
93-10	貿易과 競爭政策: OECD의 論議 ('93.12)	金廷洙
93-11	러시아 經濟改革의 進行 狀況과 評價 ('93.12)	李昌在
93-12	地域主義 深化와 韓國의 選擇 ('93.12)	魯在峯
93-13	國內 製造業分野 外國人投資企業의 現況 및 特性 ('93.12)	金寬濤
93-14	日本의 金融自由化와  貨의 國際化 ('93.12)	權才重
93-15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論議와 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 ('93.12)	俞鎮守
93-16	通貨先物市場 導入에 관한 研究 ('93.12)	金哲三
93-17	OECD 主要國의 科學技術政策 ('93.12)	洪裕洙
94-01	1994年度 世界經濟 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01)	
94-02	EC通貨統合의 進展과 波及影響 ('94.01)	曹琮和
94-03	國際金融 環境變化와 企業의 國際金融市場 活用戰略 ('94.01)	曹正錄
94-04	技術導入과  테크노마트의 活用 ('94.03)	王允鍾

94-05	戰換期の 臺灣經濟 ('94.02)	柳在元
94-06	우리經濟의 國際化 ('94.04)	金博洙, 金廷洙
94-07	新三低-舊三低의 比較分析과 政策對應('94.5)	共 同
94-08	主要國의 投資自由地域 運營現況과 우리制度의 改善方案 ('94.05)	金準東
94-09	北韓의 交易現況과 對外經濟政策 ('94.10)	金尙謙
94-10	對日貿易 赤字國의 對應실태와 示唆點-臺灣의 경우 ('94.10)	任千錫
94-11	環境産業의 國際動向 및 政策示唆點 ('94.10)	張台求
94-12	UN 持續開發委員會의 論議現況 및 政策課題 ('94.11)	李鎬生
94-13	1995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4.12)	共 同
94-14	서비스産業의 國際化 ('94.12)	王允鍾
94-15	서비스交易과 세이프가드 ('94.12)	蔡 旭
94-16	글로벌化 時代에서의 輸出과 海外直接投資 ('94.12)	金準東
94-17	豆滿江地域開發事業과 韓半島 ('94.12)	金益洙
94-18	러시아 經濟改革의 地方別 波級影響 ('94.12)	李昌在
94-19	金融監督規制의 現況과 對應方案： 資本適正性を 中心으로 ('94.12)	曹琮和
94-20	ASEAN 自由貿易地帶의 結成과 韓國의 對外貿易政策 ('94.12)	吳尙勉
94-21	OECD 主要國의 ODA 支援現況과 韓國의 對應戰略 ('94.12)	金學洙
94-22	東北亞 環境協力の 推移와 課題 ('94.12)	韓宅煥
94-23	서비스交易에 있어서의 交易障壁 -美國, 日本, EU의 서비스 讓許表를 중심으로- ('94.12)	禹榮洙
94-24	美國 通商政策의 基調와 對東아시아 貿易自由化 方案 ('94.12)	金尙謙
94-25	엔高下에서의 日本企業의 對應實態와 示唆點 ('94.12)	任千錫
94-26	專門職業서비스 供給者의 資格認定 ('94.12)	金址鴻
94-27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the United States: A Review of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 ('94.12)	Eugene John Park
94-28	海外資金調達의 國內巨視經濟에 미치는 影響 ('94.12)	張義泰
94-29	海外資金調達의 國際的 現況과 政策示唆點('94.12)	
95-01	UR 이후 競爭政策에 관한 國際的 懸案('95.04)	
95-02	貿易과 環境：GATT/WTO의 논의('95.04)	
95-03	主要 先進國의 對韓 輸入規制 形態 比率分析('99.05)	
95-04	農畜産物 市場開放에 따른 輸入管理方案('95.06)	
95-05	일본기업의 對 아시아  직접투자('95.06)	
95-06	우리나라 外國人直接投資의 追加開放方案 ('95.08)	金準東

- 95-07 WTO體制下的 南北韓 經濟 交流 ('95.10) 李相萬  
 : 南北韓 經濟交流과 國際規範과의 調和方案
- 95-08 APEC 經濟協力과 原產地規程 韓弘烈
- 95-09 共同研究開發과 國際的 라이선스契約에 관한 主要國의 競爭政策 俞鎮守
- 95-10 1996年度 世界經濟展望과 對外經濟政策課題 ('95.12) 共 同

### ■ 세미나資料

- 90-01 EC 統合과 政策對應 ('90.01) 共 同
- 90-02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우리의 對應方案 ('90.04) 朴泰鎬 編
- 90-03 韓國과 社會主義圈의 關係發展 및 南北韓 關係變化의 展望 ('90.06) 吳勇錫 編
- 90-04 Jang-Won Suh and Jae-Bong Ro (eds.),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The Way Ahead ('90.11)
- 91-01 EC統合과 우리의 대응방안 ('91.02) 閔充基 編
- 91-02 Taeho Bark and Wook Chae (eds.), Uruguay Round: Unresolved Issues and Prospects ('91.09)
- 91-03 Jang-Won Suh (ed.),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Perspectives and Challenges ('91.12)
- 92-01 Chung Ki Min (e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EC and Korea: Problems and Prospects ('92.06)
- 92-02 Jehoon Park, Russia's Reform and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Russia ('92.09)
- 93-01 Jin 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93.02)
- 93-02 Chang-Jae Lee,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Certainties vs. Uncertainties ('93.12)
- 93-03 Bak-Soo Kim, The Asian Dimension of EC Integration ('93.12)
- 93-04 Regional Context for Korea's Dynamism ('93.12)
- 94-01 韓日經濟協力の 新構想 ('94.06) 任千錫 編
- 94-02 韓中經濟協力の 新構圖想 ('94.06) 金時中 編
- 94-03 新세계무역체제와 한국 - 서덜랜드 GATT사무총장 초청강연 ('94.09) 孫讚鉉 編
- 94-04 Korea-U.S.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um 2 ('94.11) 洪裕洙 編
- 94-05 Trade-Environment Issues and Korea's Alternatives 韓宅煥 編

('94.12)

- 95-01 中國의 改革 開放과 韓中經濟協力の 未來('95.04) 金時中  
95-02 Korea in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朴成勳

■ Working Paper

- 90-01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Bodies in the Asia-Pacific : Working Mechanism and Linkages ('90.08) 金廷洙  
90-02 Strategic Partnering Activity by European Firms through the ESPRIT Program ('90.08) L.Y.Mytelka  
91-01 Models of Exchange Rate Behavior: Application to the Yen and the Mark ('91.01) 郭承\*  
91-02 Anti-dumping Restrictions against Korean Exports : Major Focus on Consumer Electronic Products ('91.05) 朴泰鎬  
91-03 Implications of Economic Reforms in CEECs for DAEs : with Emphasis on the Korean Case ('91.07) 洪裕洙  
91-04 The ANIEs-an Intermediate Absorber of Intraregional Exports? ('91.07) 柳莊熙  
91-05 The Uruguay Round Negotiations and the Korean Economy ('91.10) Taeho Bark  
92-01 Changing World Trade Environment and New Political Economics ('92.09) Jang-Hee Yoo  
93-01 Economic Effects of Import Source Diversification Policy(ISDP) ('93.01) In-Soo Kang  
93-02 Korea's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outheast Asia ('93.03) Jai-Won Ryou, Byung-Nak Sona  
93-03 German Economy after Unification-Facts, Prospects and Implications for Korea ('93.06) Sung-Hoon Park  
93-04 A Note On Korea's Anti-dumping System and Practices ('93.06) Wook Chae  
93-05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Exports and the Role of the EC Market ('93.10) Chung Ki Min  
93-06 Tax Implications of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93.12) Joo-Sung Jun  
93-07 Leveraging Technology for Strategic Advantage in the Global Market : Case of the Korean Electronics Industry ('93.12) Yoo Soo Hong

93-08	Changing Patterns of Korea's Trade in Goods and Services ('93.12)	Jin-Soo Yoo
94-01	Current Status and Prospects for Korea-Russian Economic Cooperation ('94.01)	Chang-Jae Lee
94-02	Development of Foreign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n and Russia ('94.08)	JeHoon Park
94-03	Technology Transfer : the Korean Experience ('94.11)	Yoo Soo Hong

政策資料 95-11  
中國經濟의 國際化 評價

---

1995年 12月 28日 印刷

1995年 12月 30日 發行

發行人 柳 莊 熙

發行處 對 外 經 濟 政 策 研 究 院

서울市江南區大峙3洞 942-1番地君子빌딩 14層-18層

電話：528-5555 FAX：528-5511, 5522

登錄：1990年 11月 7日 第 16-375號

印 刷 오름시스템(주) 전화：273-7011

---

\* 本 報 告 書 內 容 的 無 斷 轉 載 · 譯 載 · 複 寫 墨 禁 止

ISBN 89-322-2042-5